

日本國速記界視察報告書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日本国速記界視察報告書発刊에際하여

우리 速記文化의 歷史는 비록 日撫하나 解放後 政治社会의 인不安속에서도 우리 速記同人們은 速記文化의 發展을 위해서 停滯을 박차고 七顛八起해온 努力은 누구도 否認할수 없을 것이며 韓國 議會史를 비롯한 貴重한 記錄이 速記人們의 손에 依해 이루어진 그重且大한 荣績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수없다.

그러나 人類文化의 發達은 永劫을 두고 더 해갈 것임에 来日의 ◇ 흠 ◇ 없는 보다 나은 燦然한 速記文化의 發展을 위해 우리 速記同人们은 힘에 힘을모아 名實 共히 社團法人体設立을 위한 手續節次가 거의 完了 段階에 있으며 이제 그 速記學, 術 研究에도 拍車을 加하고 있는데 速記外 더불어 半生을 보내온 本協會 前研究委員長 이었던 金鎮基同志가 日本国을 訪問할 機会가 있어 速記文化의 歷史가 우리보다 거의 半世紀나 깊은 日本国 速記界的 狀況을 調查 依頼하였던바 貴重한 報告権가 提出되었고 더구나 速記人으로서는 처음 海外에 나가서 外國의 速記界的 狀況을 注意깊게 調查해온 資料이기 까닭에 速記學・術 研究에 一助가 될것으로 믿어 여러會員들에게 이資料를 紹介하기에 蹊躇하지 않는 바이다.

비록 나이어린 우리速記協會일 망정 여러 會員들의 不斷한

努力과 奇抜한 創意力은 来日의 速記界에 대한 柱石之役으로서
의 狸持는 길이 남으리라.

会長 李 源 万

序　　言

우리나라 速記術이 実用된 지 於焉 20 餘年 二間 6, 25 의 動亂
과 4. 19. 5. 16 等의 政治的 受難 속에서 一時나마 速記界의
發展이 停滯되었던 때도 있었으나 그間의 研究와 教育에 依하
여 初期 実用段階에 比하면 그래도 長足의 發展을 期하여 왔다
고 본다。

幼年期에서 이제 경우 少年期에 들어선 우리나라 速記界의 發
展을 為하여 外國의 議會記錄業務制度 와 速記界의 動向에 関한
資料蒐集이 몹시 아쉬웠던 터에 今年度 國會事務處職員 海外視察
및 調査研究計劃에 依하여 本人이 日本国議會制度 視察研究의 命
을 받고 3月 15日부터 4月 3日까지 20 日間에 걸쳐 隣接 日
本国에 派遣 되었었다.

日本國議會制度 視察研究에서 速記人인 本人이 가장 注意깊게
検討해 본 것은 亦是 日本国의 議會記錄業務制度 와 速記界의
動向이었고 머구나 우리나라 速記人의 直接 外國의 速記界를 視
察研究해 본 것은 처음이었던 만큼 그 使命의 重大性을 痛感 하여
可及的 細密히 注意깊게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1世紀에 가까운 오랜 歷史를 지닌 日本의 組織的이고 体系있
는 議會記錄業務制度나 速記界의 活動樣相은 우리나라가 겨우 20
餘年이라는 短은 歷史와 社會에서의 認識不足으로 儘히 微微한
需要임에도 不拘하고 速記士의 供給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略

但한 現実과는 너무도 큰 差異가 있었음은 周知의 事實이었다
日本国은 그 言語에 있어 우리와 같은 「우랄 알라이」 語族일뿐
아니라 우리말 速記術의 大部分이 日本 速記 構成源에 基本을
두고 있어 密接한 聯關係이 있는만큼 日本速記界를 不斷히 研究
検討함으로써 우리나라 速記發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은 린어
疑心치 않는다。

制限된 韶은 期間이어서 走馬看山格으로 돌아 볼수 밖에 없었던 것을 아쉬워하며 同人 여러분의 期待에 符合될만한 豊富한 内容을 収錄하지 못한 것을 諒解하여 주기 바란다。

拙稿이나마 収錄된 資料가 우리나라 速記界 發展에 一助가 될 수만 있다면 多幸이라 하겠다。

1968年6月 日

議事局速記課

速記第一係長 金鎮基

目 次

第1章 国会事務局 記録部編	1
第1節 概観 및 沿革	1
第2節 兩院記録部의 現況 및 運營実態	2
1. 機 構	2
2. 人 員	6
3. 業務範囲 및 会議録作成過程	8
4. 速記時間	10
5. 錄 音	10
6. 会議録保存	10
7. 速記監督官制度	10
8. 調査業務制度	11
9. 速記職員の採用 및 昇進試験基準	11
10. 速記職員의 处遇	15
附録 1. 宪法 및 国会法(記録関係条文抜萃)	83
2. 衆議院規則(会議録関係条文抜萃)	83
3. 参議院規則(会議録関係条文抜萃)	83
第2章 速記者養成所編	25

才 1 節 兩院速記者養成所의 運營実態 ----- 25

1 · 概觀 및 沿革 -----	25
2 · 衆議院速記者養成所의 現況 -----	26
3 · 參議院速記者養成所의 現況 -----	28
4 · 養成所入所生志願狀況 -----	29
5 · 募集試驗 -----	30

附錄 4 ~ 1 衆議院速記者養成所 規則

4 ~ 2 衆議院速記者養成所入所案內

* 5 ~ 1 參議院速記者養成所生徒規則

5 ~ 2 參議院速記者養成所入所案內

才 2 節 早稻田速記學校（民間教育機關）의 運營実態 ----- 30

1 · 沿革 -----	31
2 · 教育의 目的及 方針 -----	31
3 · 役員, 教職員, 講師 -----	32
4 · 教育課程 -----	33
5 · 教育科目 -----	33
6 · 修業年限及 授業時間 -----	36
7 · 學生의 年令, 性別構成 -----	37
8 · 1968年度 募集要綱 -----	37

才 3 節 財團法人 早稻田速記普及協会（通信教育）의 現況 --- 39

1. 機構 및 業務現況 ----- 39

2. 収支豫算 ----- 40

才 3 章 日本速記界 및 速記協会編 ----- 43

才 1 節 日本速記界의 現況 ----- 43

1. 日本速記의 発展過程 ----- 43

2. 日本速記의 法式構成 ----- 46

3. 日本速記界的 現況 ----- 47

4. 概 説 ----- 47

5. 速記利用分野 ----- 47

6. 速記教育現況 ----- 49

7. 全国速記士人員數 및 就業分布 ----- 51

才 2 節 日本速記協会의 実態 ----- 52

1. 沿革 및 概観 ----- 52

2. 1968年度事業計劃 -----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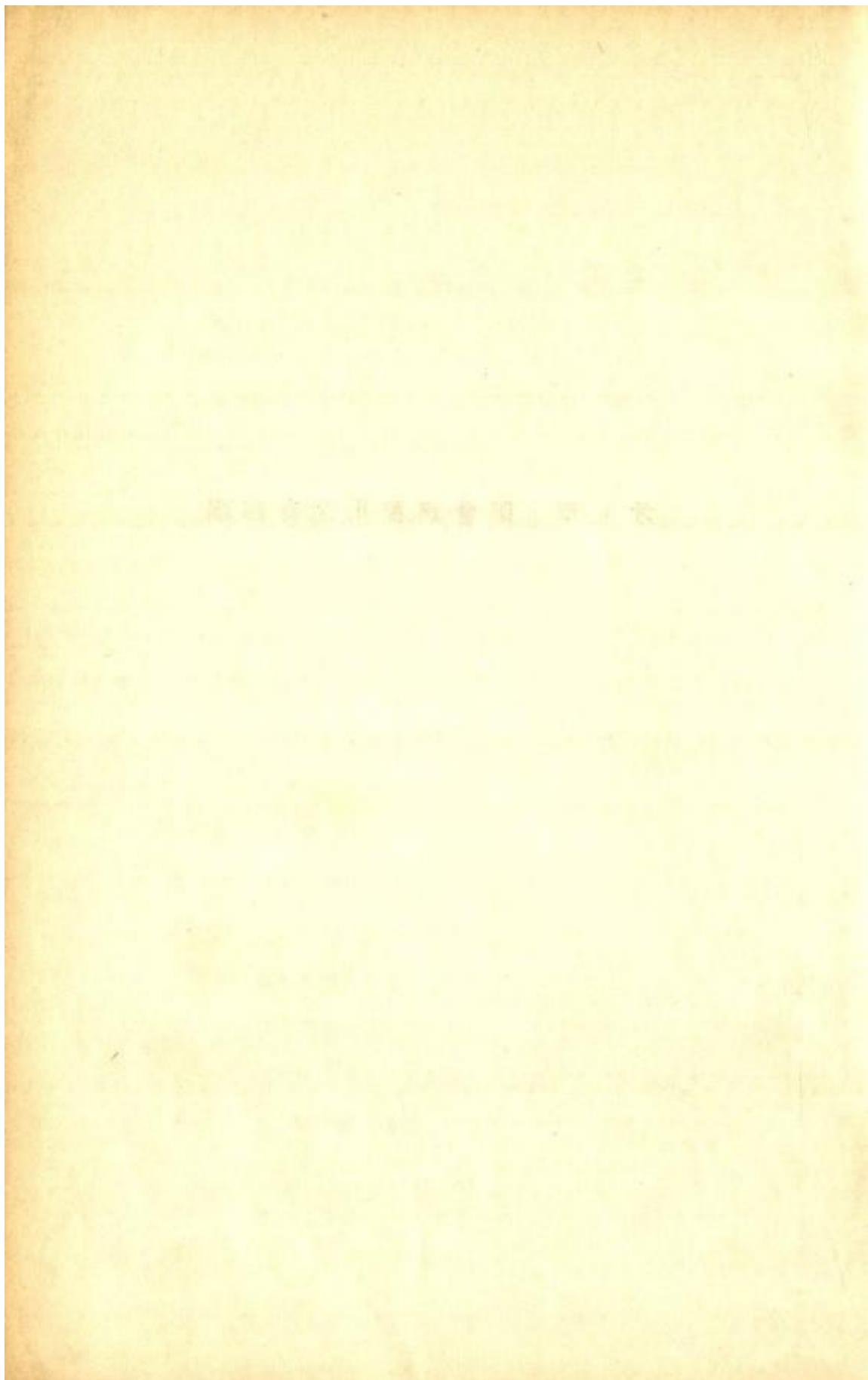
3. 1968年度豫算 및 1967年度損益計算書 ----- 56

4. 速記技能検定試験 ----- 60

5. 議事記録事務研修会 ----- 64

6. 出版物紹介	67
才 3 節 速記士会外 速記料金의 協定	68
附録 6～1 社團法人 日本速記協会定款 (抜萃)	
+ 6～2 社團法人 日本速記協会 定款施行細則 (抜萃)	
+ 7 東京速記士会会則	
才 4 節 裁判速記外 速記打字의 実態	71
1. 裁判速記의 構観	71
2. 速記打字의 実態	73
才 4 章 우리나라国会制度외의 比較検討	75
才 1 節 機構	77
才 2 節 会議録編集・校正・印刷制度	77
才 3 節 会議録配付・保存制度	78
才 4 節 速記監督官制度	79
才 5 節 調査業務制度	80
才 6 節 速記職員昇進試験制度	81
才 7 節 速記職員給料制度	81

第一章 國會事務局記錄部編



第1章 国会事務局記録部編

第1節 概観 및 沿革

1890年(明治23年) 처음으로 憲法이 制定 発布되어 그
憲法에 따라 帝国議会가 成立되었다.

1882년에 田鎖綱紀에 依하여 速記術이 考案 発表된 以後
第1回 帝国議会가 成立되기까지 別다른 実用의 길이 없었던 日本
速記界는 議会의 成立으로 말미암아 劃期的인 發展의契机가 마련
된 것이다.

帝國議회는 速記술을 採択하여 議事録 및 速記錄을 作成키로 決定
하고 1890년 貴族院 衆議院의 各事務局에 5課中의 하나로 速
記課를 設置하여 各院에는 速記課長外에 3人의 常任速記士와 10
餘名의 臨時速記士를 두어 帝國議회 第1回 会期부터 速記術에 依하
여 記錄業務를 遂行케하였다.

速記課機構의 變遷狀況은 다음과 같다.

1890年 兩院事務局에 각각 速記課設置

1896年 衆議院 速記課과 議事課에 合併, 1900年 復活

1899年 貴族院 速記課과 議事課에 合併, 1902年 復活

1912年 貴族院 速記課과 再次 議事課에 合併, 1918年 復活

1947年 衆議院 記録部 内에 速記 第1課 速記第2課 速記
者養成所 設置

參議院 記録部 밑에 速記課, 速記者養成所 設置.

1948年 參議院 記錄部内에 編輯課 設置.

1950年 衆議院 記錄部内에 速記 第3課 新設.

1952年 參議院 記錄部는 従來의 編輯課, 速記課를 速記 第1課, 速記 第2課, 速記 第3課로
改称.

1958年 參議院 記錄部내에 速記 第4課 新設.

衆議院 記錄部내에 速記 第4課 新設.

第2節 兩院記錄부의 現況 및 運營実態

1. 機 構

兩院 事務局은 各其 記錄部를 두고 그 일에 速記 第1課, 第2課, 第3課, 第4課 및 速記者養成所를 두고 있다. 兩院의 事務分掌規程中 會議錄에 關係되는 条文은 다음과 같다.

衆議院事務局事務分掌規程(抜萃)

第5条 記錄部에 速記 第1課, 第2課, 第3課, 第4課 및 速記者養成所를 둔다.

第1課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

1. 本會議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関한 事項.
2. 議院運營委員會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関한 事項.
3. 常務委員會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関한 事項.
4. 特別委員會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関한 事項.
5. 兩院協議會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関한 事項.
6. 速記에 必要한 錄音에 関한 事項.

7. 그外 部内 他課의 分掌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第2課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

1. 豫算委員會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關한 事項.
2. 内閣委員會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關한 事項.
3. 地方行政委員會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關한 事項.
4. 法務委員會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關한 事項.
5. 外務委員會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關한 事項.

第3課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

1. 大蔵委員會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關한 事項.
2. 文教委員會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關한 事項.
3. 社會勞動委員會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關한 事項.
4. 農林水產委員會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關한 事項.

第4課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

1. 商工委員會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關한 事項.
2. 運輸委員會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關한 事項.
3. 通信委員會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關한 事項.
4. 建設委員會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關한 事項.
5. 決算委員會의 速記 및 會議錄의 編輯에 關한 事項.

速記者養成所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

1. 速記者의 養成에 關한 事項.
2. 速記의 研究에 關한 事項.

第3条 議事部에 議事課, 議案課, 請願課 및 資料課를 둔다.

資料課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

1. 資料의 芮集整理 및 調製에 関한 事項
2. 図書 및 雜誌購入에 関한 事項.
3. 委員會議錄事項索引와 法令索引의 作製에 関한 事項.
4. 會議錄, 議事錄, 議事速記錄, 委員會議錄, 議事綜覽, 國會에
關한 公文書(事務局에 關한 公文書는 除함) 等의 保存에
關한 事項.

第8条 管理部에 管理課, 第1議員会館課, 第2議員会館課, 自動車課,
印刷課, 厚生課 및 用務課를 둔다.

印刷課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

1. 會議錄의 印刷에 関한 事項.
2. 議案類, 參考資料等의 印刷에 関한 事項.

參議院事務局分課規程(抜萃)

第4条 記録部에 다음의 4課 및 1所를 둔다.

1. 速記 第1課
2. 速記 第2課
3. 速記 第3課
4. 速記 第4課
5. 速記者養成所

第24条 記録部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

1. 議院의 會議, 委員會 및 兩院協議會의 速記와 會議錄의 校閱 編輯에 關한 事項.
2. 會議錄의 保管에 關한 事項.
3. 速記者養成에 關한 事項.

第25条 速記 第1課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

1. 議院의 會議의 速記 및 會議錄의 校閱에 關한 事項
2. 議院運營委員會, 懲罰委員會, 特別委員會 및 兩院協議會의 速記와 會議錄의 校閱에 關한 事項.
3. 會議錄의 編輯에 關한 事項.
4. 會議錄의 保管에 關한 事項.
5. 第1号 및 第2号에 掲載된 會議의 速記에 關한 調查 및 資料의 収集에 關한 事項.
6. 部內 他課의 分掌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務에 關한 事項.

第26条 速記 第2課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

1. 豫算委員會, 內閣委員會, 地方行政委員會, 法務委員會 및 外務委員會의 速記와 會議錄의 校閱에 關한 事項.
2. 前号에 掲載된 會議의 速記에 關한 調查 및 資料의 収集에 關한 事項.

第27条 速記 第3課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

1. 大藏委員會, 文教委員會, 社會勞動委員會 및 農林水產委員會의 速記와 會議錄의 校閱에 關한 事項.

2. 前号의掲載된 회의速記에關한 調査 및 資料의收集에關한事項.

第28条 速記 第4課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

1. 商工委員會, 運輸委員會, 通信委員會, 建設委員會 및 決算委員會의速記와 會議錄의校閱에關한事項.

2. 前号에掲載된 회의速記에關한 調査 및 資料의收集에關한事項.

第29条 速記者養成所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

1. 速記者의養成에關한事項.

2. 速記의研究에關한事項.

第39条 印刷課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

1. 會議錄의印刷에關한事項.

2. 議案, 參考資料 및 其他書類의印刷에關한事項.

3. 印刷物의配付에關한事項.

第51条 速記者養成所에 所長을 두고 參事中에서 이를任命한다.

2. 人員

衆議院 記錄部는 部長以下 155人, 參議院 記錄部는 部長以下 134人이 있으며 兩院 速記職員의 分類別 人員數 比較는 다음과 같다.

兩院速記職員別人員類比較表

1968.1.10 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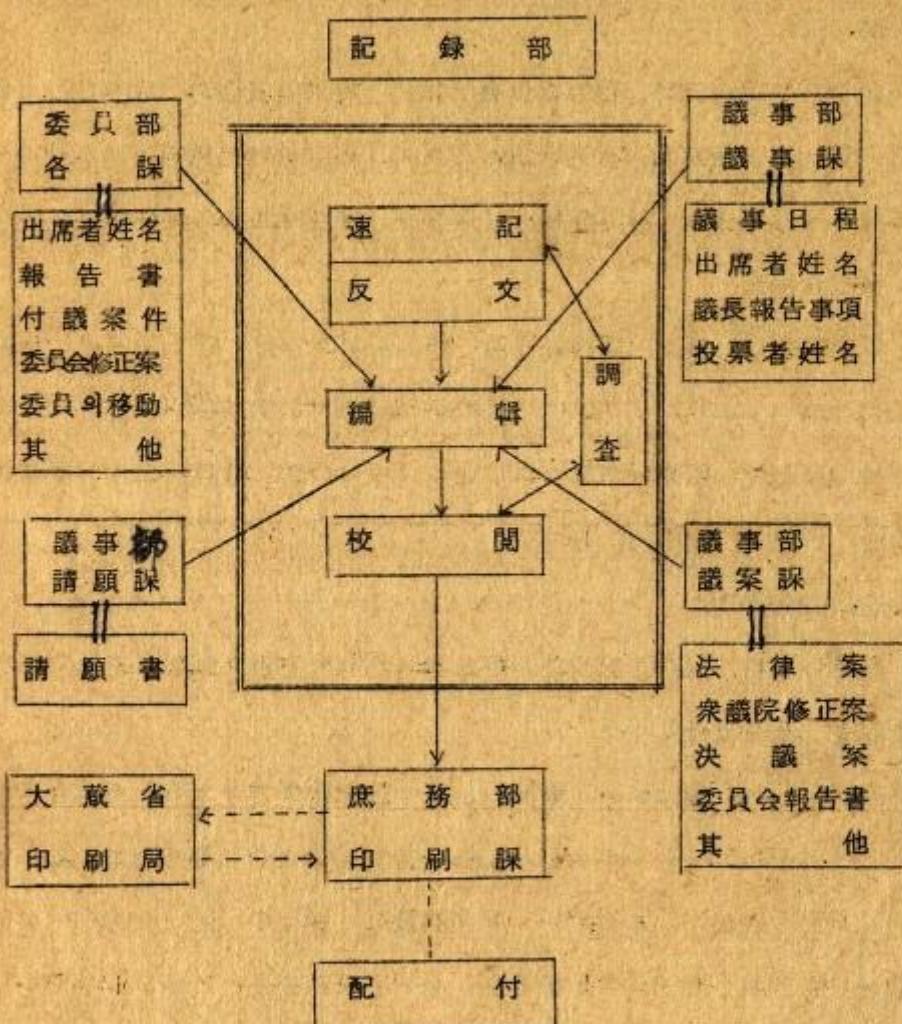
分類			人員數		分類			人員數	
			衆議院	參議院				衆議院	參議院
職 務 別	參事	等級			課 所 別	第1課	38	31	
		行政2等級	5	5		第2課	40	38	
	速記監督	行政2等級	11	8		第3課	30	31	
		速記1〃	17	16		第4課	41	30	
	速記副監督	速記1〃	20	9		養成所	6	4	
		速記2〃	30	39		35年以上	9	7	
	主任速記士	速記2〃	13	22		30〃	16	3	
		速記3〃	41	25		25〃	7	6	
	速記士	速記4〃	14	7		20〃	19	15	
		速記士補	速記5〃	4		15〃	31	58	
職 務 別	課長		4	4		10〃	26	19	
	所長		1	1		5〃	18	10	
	校閱		21	14		5年未滿	24	11	
	運營・調査		4	4		60代	3	2	
	教授		5	3		50〃	26	10	
	速記実務		120	108		40〃	21	25	
	男女別	男子	115	94		30〃	62	75	
	女子		40	40		20〃	38	17	
總計			155	134					

3. 業務範囲 및 會議錄作成過程

兩院 다같아 本會議外 各 常任委員會을 비롯하여 各種 特別委員會의 會議錄을 作成 印刷하여 本會議錄은 會議後 2~4時間 以內에 配付하고 常任委員會와 特別委員會는 普通 1週日後에 印刷 配付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国会 會議錄의 印刷 配付實情과 同一하다.

또한 各院의 事務分掌規程上에는 速記 第1課, 第2課, 第3課, 第4課가 各其 專擔委員會別로 執務도록 規定되어 있으나 實際 運營面에 있어서는 業務量의 偏重을 避하고 速記業務의 迅速을 記하기 為하여 全課가 同一한 「시스템」으로 運營되고 있다.
參議院의 會議錄 作成 및 印刷配付過程은 다음圖解와 같다.

參議院会議録作成及印刷配付過程図解



4. 速記時間

速記時間은 2人 1組가 5分乃至 10分으로서 그때 그때의 狀況에 따라 臨機応變으로 調整 執務하고 있다.

5. 錄音

錄音은 本會議外豫算委員會 其他 特別委員會의 重要한 것만을 速記補助用으로 吹込하고 있으며 内閣總理大臣의 演說이나 其他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部分만을 重點的으로 保存하고 있다.

6. 會議錄保存

衆議院은 議事部 調查課에서 參議院은 速記 第1課에서 각각 保存하고 있으나 80年에 가까운 議会의 記錄은 그量이 巨大하여 保存이 困難하므로 그것을 「マイクロ 필름」으로 保存할 것을 研究 檢討中에 있다.

7. 速記監督官制度

우리나라의 國회速記課外 두드러지게 다른것으로는 速記監督官制度를 들수있다.

各速記課에는 速記職의 最高職位인 速記監督官이 5·6名씩 있다. 이들은 각각 本會議 또는 常任委員會을 專担하고 있으면서 自己 專担의 本會議나 常任委員會 開會中 同 會議에 參觀하여 會議의 経過와 記錄하기 어려운 부분을 「메모」한다. 그리하여 速記士의 原稿作成이 完了되면 該當 監督官이 校閱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速記士의 誤聽 誤記等으로 因한 記錄

의 未偏点을 補完하여 正確한 会議錄을 発刊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따라서 速記課의 業務는 速記監督官의 原稿校閱로서 끝나며 이어 印刷課에 委付된다.

8. 調査業務制度

兩院의 各 記録部에는 調査係가 있다. 이 調査係는 記録部가 必要로 하는 各種 資料를 各 省으로 부터 蒐集하고 있으며, 새로운 用語는 「카드」로 作成한後 用語集을 発刊하고 新聞에 報道되는 各種 重要事件도 事件別로 「스크랩」한다. 문만아니라 其他 各種 統計等의 書籍을 購入하여 業務에 活用도록 하고 있다.

9. 速記職의 採用 및 升進試驗基準

參議院은 速記士의 採用을 一般 公募에 依하지 아니하고 參議院 速記者養成所 出身人으로 採用하고 있다.

衆議院에 있어서는 一般 公募에 依하여 速記士를 採用하고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衆議院 速記者養成所 出身이 優秀한 成績으로 合格되고 있어 外部志願者の 合格은 全無한 狀態이다.

速記職의 職級은 速記士補, 速記士, 主任速記士, 速記副監督, 速記監督等이 있는데 速記士補로 採用된 者는 1年後에 速記士로 升格할 資格이 생기고 速記士로서 3年間 勤務한 者는 主任速記士로 升格할 資格이 생기며 主任速記士로서 7年間 勤務한

者는 速記副監督으로 昇格할 資格이 생긴다.

그러나 所定基準에 依한 速記技術試驗에 合格하지 아니하면 昇格할 수없으며 速記副監督以上은 無試驗 昇格되는 制度가 있다.

兩院의 速記技術試驗基準은 다음과 같다.

兩院速記技術試験基準

1. 補助速記者採用技術試験

試験은 2回行인다. 每回 国会会議錄을 標準으로 하고, 速度는 10分間 2,900字内外, 許容失点은 3%를 原則으로 한다.

2. 速記士補採用技術試験

試験은 3回行인다. 第1回는 国会会議錄을 標準으로 하고, 速度는 10分間 3,200字内外, 許容失点은 2%를 原則으로 한다.

第2回는 国会会議錄 또는 一般講演等에 있어서의 複雜한 内容의 것을 標準으로 하고, 速度는 10分間 3,200字内外 許容失点은 2%를 原則으로 한다.

第3回는 国会会議錄을 標準으로 하고 速度에 重点을 두어 10分間 3,400字内外 許容失点은 2%를 原則으로 한다.

3. 速記士 昇格技術試験

試験은 3回行인다. 第1回는 国会会議錄을 標準으로 하고 委員會에 있어서의 実務를 參照하여 速度는 10分間 3,200字内外 訸容失点은 2%를 原則으로 한다.

第2回는 国会会議錄을 標準으로 하고 特히 參議院会議錄様式例와 用字例에 重点을 두어 速度는 10分間 3,000字内外 訸容失点은 2%를 原則으로 한다.

第3回는 国会会議錄을 標準으로 하고 速度에 重点을 두어

10分間 3,400字内外 許容失点은 2%를 原則으로 한다.

4. 主任速記士昇格技術試験

試験은 4回行한다. 第1回는 国会会議録을 標準으로하고 委員会에 있어서의 実務를 参照하여 速度는 10分間 3,300字内外 許容失点은 2%를 原則으로 한다.

第2回는 国会会議録을 標準으로 하고 特히 会議録様式例에 重点을 두어 速度는 10分間 3,000字内外 許容失点은 2%를 原則으로 한다.

第3回는 国会会議録을 標準으로하고 特히 下級速記士에 对する 会議録作成上의 指導能力을 判定하는데에 重点을 두어 速度는 10分間 3,200字内外 許容失点은 2%를 原則으로 하여 指導能力에 对해서는 一定한 評点을 매긴다.

第4回는 国会会議録을 標準으로 하고 速度에 重点을 두어 10分間 3,500字内外 許容失点은 2%를 原則으로 한다.

10. 速記職員의 처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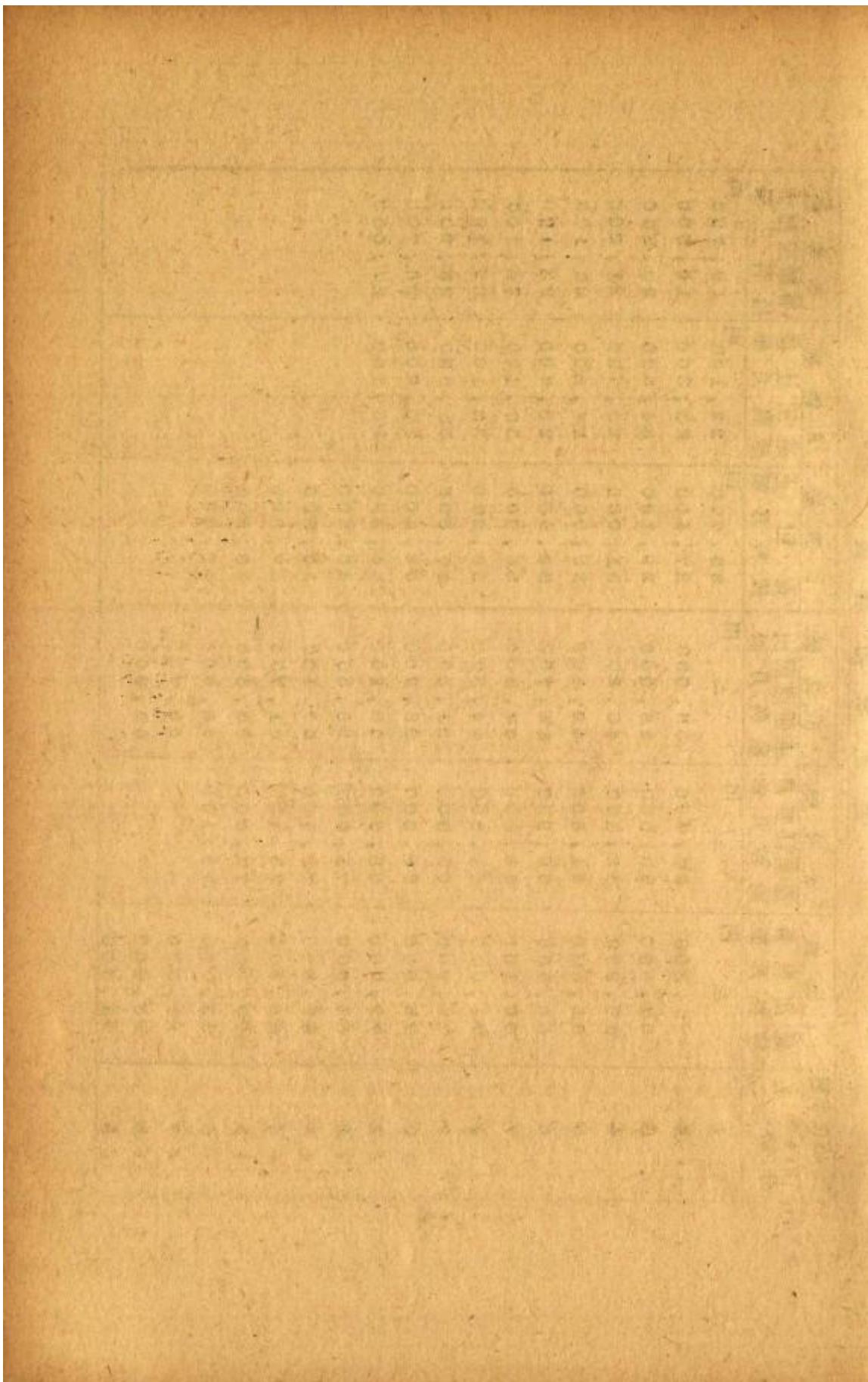
국회는 국회職員의 給与等에 關한 規程에 依하여 特別給料表, 指定職給料表, 行政職給料表 (1) (2), 速記職給料表 議院警察職給料表等의 区分으로 각各 다른 給料制度를 採択하고 있다.

이에 依하면 一般行政職보다 速記職의 給料가 越等히 優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速記職과 行政職의 給料表는 다음과 같다.

速記職給料表

職務等級 名 號	1 等 記 料 遠 給	2 等 監 督 額 月 給	3 等 級 士 額 月 給	4 等 級 士 額 月 給	5 等 級 士 額 月 給	6 等 級 士 額 月 給
1	-	-	-	25,700	22,100	18,700
2	55,300	47,700	35,800	27,400	23,300	19,500
3	57,800	50,000	38,000	29,100	24,500	20,300
4	60,300	52,300	40,200	31,000	25,700	21,200
5	62,800	54,600	42,400	32,900	27,200	22,100
6	65,300	56,900	44,700	34,900	28,700	23,100
7	68,100	59,200	47,000	36,900	30,400	24,100
8	71,000	61,500	49,300	38,800	32,100	25,100
9	73,900	63,800	51,600	40,600	33,800	25,900
10	76,800	66,200	53,900	42,400	35,200	26,700
11	79,700	68,600	56,200	44,200	36,100	27,500
12	82,600	71,000	58,500	45,500		
13	85,500	73,400	60,100	46,800		
14	88,200	75,400	61,700	47,800		
15	90,700	77,400	63,300	48,800		
16	93,000	79,100	64,500	49,800		
17	95,000		65,700			
18	96,800		66,900			
19	98,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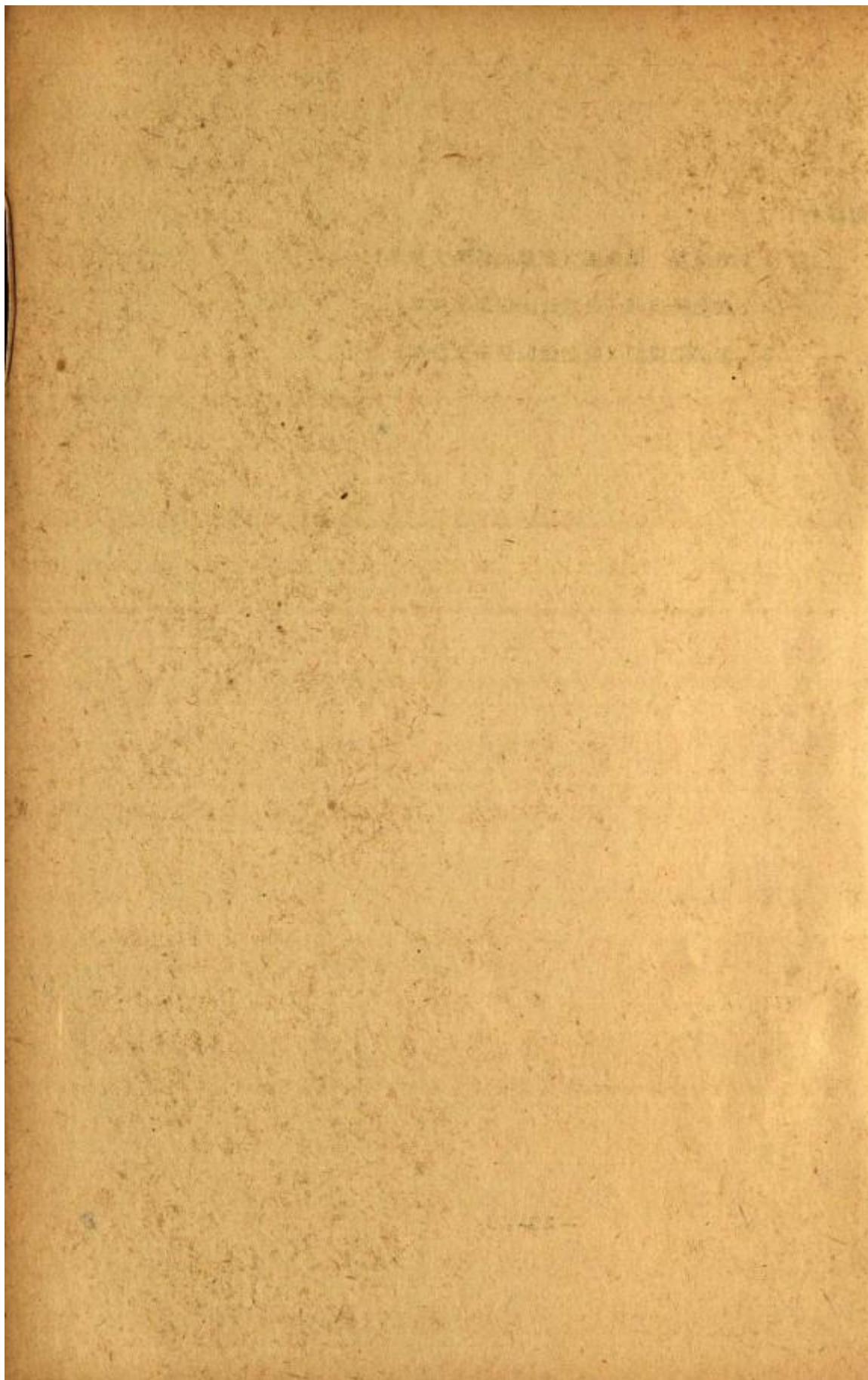


行 政 職 給 料 表 (一)

職務 名 号	1 級 部長、副部長	2 級 課長、室長	3 級 課長補佐	4 級 課長補佐	5 級 課長補佐	6 級 課長	7 級 事務員	8 級 書類月額
	給料月額	給料月額	給料月額	給料月額	給料月額	給料月額	給料月額	給料月額
1	83,100円	60,800円	—	—	—	25,700円	32,100円	16,600円
2	87,300	64,000	52,800	43,100	33,600	27,400	28,300	17,300
3	91,500	67,200	55,300	45,400	35,800	29,100	24,500	18,000
4	95,700	70,400	57,800	47,700	38,000	31,000	25,700	18,700
5	99,900	73,600	60,300	50,000	40,200	32,900	27,200	19,500
6	104,100	76,800	62,800	52,300	42,400	34,900	28,700	20,300
7	108,300	80,000	65,300	54,600	44,600	36,900	30,400	21,200
8	112,500	83,200	67,800	56,900	46,800	38,900	32,100	22,100
9	116,700	86,400	70,300	59,200	49,000	40,900	33,800	23,100
10	120,700	89,400	72,800	61,500	51,200	42,800	35,500	24,100
11	124,100	91,900	75,200	63,700	53,100	44,700	37,000	25,100
12	126,500	94,400	77,600	65,900	55,000	46,600	38,500	26,100
13	128,900	96,300	80,000	68,100	56,900	48,500	40,000	27,200
14	131,000	98,200	82,400	70,300	58,200	49,800	40,900	28,300
15	133,100	100,100	84,200	72,300	59,500	51,100	41,800	29,100
16			86,000	74,300	60,500	52,100		29,800
17				76,000	61,500	53,100		30,500
18				77,700	62,500	54,100		
19					63,500	55,100		

附录+

1. 宪法及 国会法（記録関係条文抜萃）
2. 衆議院規則（会議録関係条文抜萃）
3. 参議院規則（会議録関係条文抜萃）



才 2 章 速 記 者 奮 成 所 編

卷之三

第2章 速記者養成所編

第1節 兩院速記者養成所의 運營実態

1. 概観 및 治革

1914년에 始作된 第1次世界大戰은 日本經濟에 空前의 好景氣를 가져 왔다. 그 当時 速記의 需要는 亦是 國會와 新聞 通信社가 그 大宗을 이루고 있으면서 新聞社는 速記士의 待遇를 점점 改善하였으나 國會速記士의 待遇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國會速記士가 점점 新聞社 方面으로 転職하게 되어 國會速記士의 確保가 困難하게 됨에 따라 兩院事務局은 速記士 確保의 打開策으로서 1968年부터 各 速記課內에 速記練習生 制度를 두기로 하고, 各事務局에서 速記者養成費 2,400円을 獲得하였으며 貴族院速記練習生規則 및 衆議院速記者養成規則을 制定하였다.

授業年限은 처음부터 2年으로 定하고 午前 9時부터 全日制을 採択하였으며 学歴 및 年齢의 制限条件을 두어 中学卒業 또는 그 以上의 学歴所持者로서 25歳以下の 男子에 限定하여 練習生을 募集하였다.

授業料는 없고 오히려 手當을 支給하여 學習에 必要한 学用品을 給与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兩院 다 같이 多數의 応募者中에서 選抜할 수 있게 되어 이때부터 兩院事務局은 優秀한 速記技術者 補充에 円滑을 期하게 되었다. 또한 그 卒業生

全部가 両院에 採用되지 않음으로써 一般社会에도 優秀한 能力者를 많이 輩出하게 되었고 速記界 全般에 貢獻하여 両院事務局의 速記者養成機關이 日本国 速記教育의 中心的 存在로 成長한 것이다.

그리하여 両院養成所가 設立된지 50年이 되는 今年까지 1,200餘名의 卒業者를 배었으며 이들이 全部 国会에만 採用된 것이 아니고 新聞 通信社나 地方議會等 他機關으로 오히려 많은 人員이 配置되었다. 衆議院과 參議院에 採用된 者를 通算하면 350餘名에 達한다.

2. 衆議院速記者養成所의 現況

衆議院事務局事務分掌規程中 速記者養成所 該當部分은 다음과 같다.

第5条 速記者養成所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

1. 速記者의 養成에 関한 事項

2. 速記의 研究에 関한 事項

所在地 東京都世田谷区玉川用賀町3-10

施設 教室數 6

其外 事務室, 會議室, 図書室, 控室, 印刷室等이 있음

運動場 約2,600坪 (테니스코트에 準하는 施設이 있음)

生徒數 (1967年9月現在)

1学年 10名 (男5, 女5)

2学年 14名 (男5, 女9)

研修科 5名(女子 5)

計 29名(男10, 女19)

生徒手当

1学年 3,000円

2学年 4,000円

研修科 8,000円

職員数

所長 1, 副所長 1, 教授 4, 講師 4

事務職 4

速記術進度検定

1学年; 前期 3ヶ月 (4月~7月) 符號修得

前期末(9月) 速度 10分間 1,700字

後期末(3月) 速度 10分間 2,500字

~ 2,600字

2学年; 前期末(9月) 速度 10分間 3,000字

~ 3,100字

本科卒業(3月) 速度 10分間 3,200~

3,400字

研修科; 卒業(9月) 速度 10分間 3,500字

授業時間表(週)

1学年; 30時間(実科 17時間, 学科 13時間)

2学年; 32時間(実科 16時間, 学科 16時間)

研修科； 28時間（実科 20時間， 学科 8時間）

学 科

経済，漢文，法律，英語，仏語，法律用語，実務知識，様式例
帳記（書取），文字（漢語），漢語（地名），表記法（現代日
本文学史，文章），速記史，社会，新聞，国語，速記学，時事
用語，體操

創 立 1918年5月15日

卒業者数 601名（1967年3月現在）

3. 参議院速記者養成所의 現況

参議院事務局 分課規程中 速記者養成所 該当部分은 다음과 같
다.

第29条 速記者養成所는 다음의 事務를 分掌한다.

1. 速記者의 養成에 関한 事項

2. 速記의 研究에 関한 事項

所在地 東京都世田谷区玉川瀬田町338

施 設

敷地面積（職員宿舎包含） 4.079m² 1,223.7坪

建築面積（鉄筋コンクリート 2層） 400m² 120坪

床面積 1層 341m² 103坪

2層 341m² 103坪

合計 682m² 206坪

内部施設内訳：

教室数는 4, 其外 事務室, 講堂, 応接室, 医務室, 印刷室, 倉庫等이 있음。

또 用人이 家族과 함께 入住, 夜間警備에 任하고 있음。

運動場으로 테니스코ート가 있음。

(其他는 衆議院速記者養成所와 大同小異함)

創立 1918年5月5日

卒業者数 594名(1967年7月現在)

4. 養成所入所生志願狀況

1968年度의 衆議院速記者養成所의 志願者は 420名이였으며, 參議院速記者養成所의 志願者は 男子에 限하여 140名에 達한다. 이中 各各 15名의 合格者를 決定하였다.

志願生의 性別傾向을 보면 衆議院養成所에 있어서 女子의 志願數가 3分之2에 達하고 있다.

參議院은 男子만 募集하기 때문에 志願生數가 衆議院보다 明顯하게 나타나고 있다.

衆議院養成所의 女子志願生數가 3分之2에 達하고 있으나 入学을 許可하는데 있어서는 全體 定員의 3分之1 以下로 限定하여 入学을 許可하고 있다.

이와 같이 女子의 入学을 制限하는 理由는 現在 參議院이나 衆議院記錄部職員中 女子速記士가 大體로 3分之1을 占하고 있는 바, 女子는 結婚이라든가 妊娠, 夜間會議時의 困難等 職務

上不安定하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다.

5. 募集試験

募集試験科目은 国語(現代文) 英語 社会 速記適性検査等 4
과목을實施하고 있다.

適性検査試験의 内容을 보면

1. 単文의 校正形

2. 빙간의 記入形

3. 「가나」文을 漢字 띠어쓰기 등으로의 移記形等 세 가지의 极
히 常識의 問題들이다. 이에 實質의 効果面에 대해서는
学科成績이 優秀한 者이며는 適性検査試験도 優秀한 成績으로
나오기 때문에 厳格한 適性検査의 効果를 測定할 수는 없다
고 한다.

附錄 # 4 ~ 1 衆議院速記者養成所規則

4 ~ 2 衆議院速記者養成所 入所案内

5 ~ 1 參議院速記者養成所生徒規則

5 ~ 2 參議院速記者養成所 入所案内

第2節 早稲田速記学校(民間教育機関)運営의 実態

民間教育機関으로서 그 規模가 크고 優秀한 速記能力者를 가장
많이 社會에 育出하여 日本 速記界 發展에 크게 貢獻한 東京都
承認 早稲田速記学校와 同校의 財團이며 唯一한 速記通信教育機関
인 早稲田速記普及協会의 運営実態는 다음과 같다.

1. 沿革

1924년 川口涉, 早稻田大学在学中, 学校内에 "速記研究会" 를 결성, 科学的 新速記法의 研究를開始.

1929년 早稻田大学에 依하여 早稻田式速記法을 完成发表

1934년 川口涉, 東京市淀橋区戸塚町에 "早稻田式速記普及会" 를 設立 實地教育部門으로 "早稻田式速記實地教授部" 를 設置하여 授業開始

1937년 實地教授部가 "早稻田式速記士養成所"로 改称 独立.

1949년 都知事의 認可를 받아 "早稻田速記学校"로 改称

1956년 川口涉, 死去 長子 川口晃玉 早稻田式速記普及会会长과 早稻田速記学校 校長에 就任

1962년 故 川口涉 速記普及功勞者로 日本速記協会로부터 表彰받음

1967년 学校의 設置者를 財團法人 早稻田速記普及協會로 变更. 同年 3月 戸塚町1~467~4에 新校舎를 新築.

東京의 本校外에 東京都内에 4個의 分校를 비롯하여 全国 13個 都市에 分校가 있음.

2. 教育의 目的과 方針

同校의 教育方針은 教育基本法, 学校教育法, 私立学校法의 趣旨를 지켜 다음과 같은 폐에 重点을 두고 있다.

『本校는 創立以来의 긴 伝統에 基礎를 두고 速記技術을 教

授，普及함과 아울러 社会文化에 貢獻할 有能한 職能人을 養成함을 教育의 目的으로 한다.

﹂自主独立의 精神이 充滿한 人間形成의 教育을 行한다.

﹂社会文化의 發展과 維持에 必要한 創造力이 많으며 探求心이 旺盛한 人物의 育成에 努力한다.

3. 役員, 教職員, 講師

﹂設置者役員은 다음과 같다.

理事長 1名

理 事 11名

監 事 1名

﹂教職員, 講師는 다음과 같다.

學校長 1名

校務長 1名

主任教授 1名

教務主任 1名

專任教員 8名

教員助手 2名

專任講師 2名

講 師 14名

学生課 2名

校 医 1名

4. 教育課程(1967年度例)은 다음과 같다.

(数字는週間의學習時間)

本 科		專 門 科			研 究 科		
事務速記△		秘書·事務技能△			専門速記△		
指導者養成△							
速 記 法	15	速 記 法	8	速 記 法	10	速記法研究	10
国 語	2	社 会	1	社 会	1	国語学概論	1
教 科 外	1	国 語	1	国 語	1	教育心理学	2
		文 書 事 務	1	外 国 語	1	教育学概論	1
		接 遇 実 習	1	速 記 実 務	2	教 職 実 習	2
		秘 書 実 務	1	編 輯 技 能	1		
		和 文 타이프	3	和 文 타이프	3		
		英 文 타이프	3	英 文 타이프	3		
		教 科 外	1	教 科 外	1		

5. 教育科目은 다음과 같다.

7. 本 科

科 目	授 業 内 容	週 時 間 数
速 記 法	基礎教程, 訓練教程, 技能検定, 試験受験指導	14
国 語	現代語, 国語表記法, 作文指導	3
書写·教科外	硬筆書写, 教科外活動	1
	合 計	18

七. 専門科(秘書, 事務技能等)

科 目	授 業 内 容	週時間数
速記法	速度訓練, 反訳練習, 整文法, 實務速記要領, 技能検定試験受験指導	8.5
人 文	觀察法, 思考法	1
社 会	時事問題	1
文書実務	文書様式, 파일링	1
国 語	文章論, 文章技術, 作文指導	1
話 法	話法, 接遇	1.5
編輯技法	文章整理, 校正, 実習	1
経営学	企業斗経営, 企業斗事務組織, 帳票시스템	1
芸 術	文学, 美術, 演劇等の講習, 鑑賞	1
職業指導	職業倫理, 科別研究	1
合 计		18

二。専門科（専門速記ユ一△）

科 目	授 業 内 容	週時間数
速記法	速度訓練，反訳練習，整文法，実務速記演習，技能検定試験受験指導	1.4
人 文	觀察法，思考法	1
社 会	時事問題	1
国 語	文章論，文章技術，作文指導	1
職業指導	職業倫理，科別研究	1
合 計		1.8

三。研究科

科 目	授 業 内 容	週時間数
速記研究	速記法理論，速字研究，速記史	4
速記指導法	速記指導法，指導実習，実務速記	1.2
教育心理学	教育心理学	1
国語学	国語学の基礎	1
合 計		1.8

□ . 각과선택과목

과 목	授 業 内 容	週時間数
영 어	实用英会話	2
한문타이프	操作法, 文書作成, 練習, 타이프라이터	3
영문타이프	印字技術의基礎実習, 特殊技術練習, 應用練習	2
계 산	計算尺演習, 珠算練習	1

※ 上記의 科目中 1과목을 選択하게 됩.

6 . 修業年限과 授業時間은 다음과 같다.

과 부	修業年限	授 業 時 間		
本 科	昼間一部	1 年	午前 8時40分 ~ 正午	
	昼間二部	"	午後 1時 ~ 4時20分	
	夜間 部	"	6時 ~ 9時	
專 門 科	昼間一部	1 年	午前 8時40分 ~ 正午	
	昼間二部	"	午後 1時 ~ 4時20分	
	夜間 部	"	6時 ~ 9時	
研 究 科	昼間一部	1 年	午前 8時40分 ~ 正午	
	昼間二部	"	午後 1時 ~ 4時20分	
	夜間 部	"	6時 ~ 9時	

7. 学生의 年齢, 性別構成은 다음과 같다.

		18 ~ 19		20 ~ 21		22 歳以上		合計
		男	女	男	女	男	女	
昼 間 部	本 科	16	194	3	12	5	7	237
	專 門 科	12	58	12	107	7	16	212
	研 究 科			6	14	3	4	27
夜 間 部	本 科	7	31	6	44	6	26	120
	專 門 科	3	8	24	41	14	22	112
	研 究 科				3	14	7	24
		38	291	51	221	49	82	732

8. 1968年度募集要綱은 다음과 같다.

7. 募集科目, 人員, 受験資格

課程	人 員	資 格
本科	昼間部 約 200 名 夜間部 約 200 名	高校卒業 또는 이와同等以上 의者
専門科	昼間部 若干名 夜間部 ,	本科修了者 또는 그와同等의 학力者
研究科	昼間部 若干名 夜間部 ,	専門科修了者 또는 그와同等의 학力者

七. 費用

		入学時納入料 약 학비					
		入学金	施設維持費	授業料	教材費	校友会費	合計
本 科	昼間部	30,000	10,000	9,000	7,000	1,000	57,000
	夜間部	15,000	7,000	9,000	5,000	500	36,500
専 門 科	昼間部 <small>専門速記△</small>	20,000	7,000	9,000	5,000	1,000	42,000
	秘書・事務 <small>技能△</small>	20,000	7,000	9,000	7,000	1,000	44,600
	夜間部 <small>専門速記△</small>	20,000	5,000	8,000	3,000	500	36,900
研究 科	昼間部	20,000	5,000	9,000	3,000	500	37,500
	夜間部	20,000	5,000	8,000	3,000	500	36,900

第3節 財團法人 早稻田速記普及協會（通信教育）現況

1. 機構 및 業務現況은 다음과 같다.

理事長 1名

理 事 11名

監 事 1名

秘書室（室長1名，秘書1名，事務員2名）

財團의企劃（經營）調査를 担当하며 長期計劃案도樹立함
總務部（部長1名，課長2名，事務員26名）

總務 經理 担当

普及部（部長1名，課長2名，事務員21名）

募集 宣伝等 普及活動을 担当함

通信教育応募者는 年間 100萬名에 達하며 이中 60萬
名程度가 繼続 受講하고 있음。

教育指導部（部長1名，課長2名，事務員42名）

通信教育의 添削指導，學籍管理 및 地方에 講師派遣等의
業務를 担当함

開発部（部長1名，課長2名，事務員20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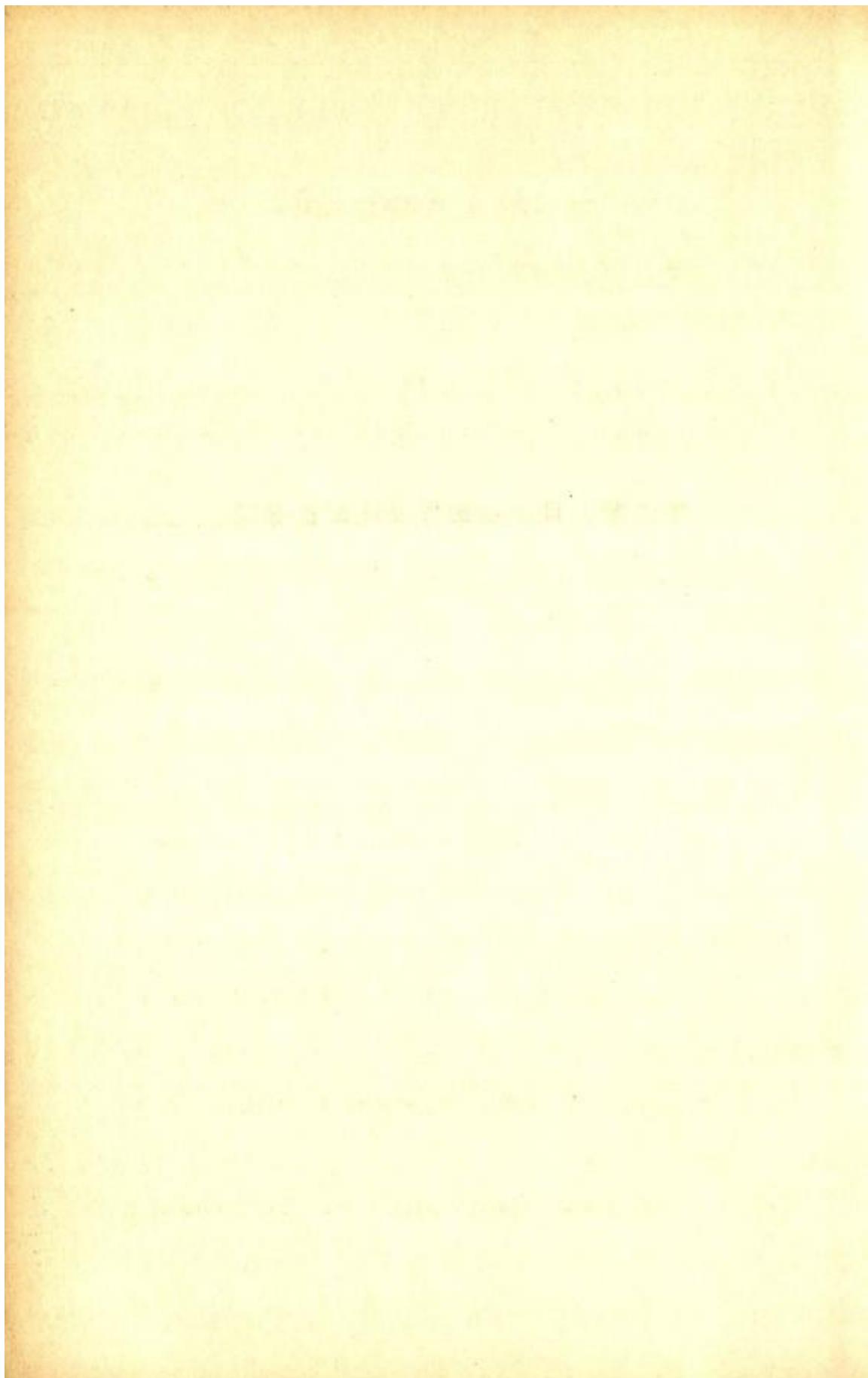
教材의 研究，製作 및 機関紙 “早稻田速記新聞” “月刊
씨크레타리”의 刊行業務를 担当함。

校務部；早稻田速記學校運營을 担当함。

2. 同協会의 収入, 支出状況은 다음과 같다.

收 入		支 出	
通信教育部門	7億	人件費	28%
速記学校	6千5百萬円	原材料費	20%
出版部門	1千5百萬円	一般管理費	18.2%
計	7億8千萬円	其他費用	23.8%
		利益金	10%
		計	100%

才 3 章 日本速記界 及速記協會編



第3章 日本速記界의 現況 및 速記協会의 実態

第1節 日本速記界의 現況

1. 日本速記의 發展過程

1968年으로서 日本速記發表 86週年이 된다.

1882년에 田鎖綱紀에 依해서 当時の 時事新報에 「傍聴記錄法」이라는 論文을 發表하고 이어 同年 10月 28日부터 第一回速記講習會를 開催한것이 日本速記의 最初이며 따라서 日本速記界에서 每年 10月 28日을 速記發表記念日로 定하여 記念行事을 하고 있다.

日本速記의 發展過程을 大体로 5期로 区分하여 그 時代別 特色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第一期는

明治初年 (1868年) 부터 明治23年 (1890年) 帝国議会成立과 同時に 速記가 採択될 때 까지의期間이다. 이期間동안에 日本에 「구라파」等의 速記가 紹介되어 日本速記가 研究되기 始作하여 田鎖綱紀의 速記講習會가 열렸으며 速記實務者가 社會에 나오기 始作하였다.

그러므로 이 期間을 日本速記의 成立期라고 할 수 있다.

2. 第二期는

第一回 帝国議会에서 記錄을 始作한 때로 부터 明治末年

(1911年) 까지의期間이다.

이期間동안에 日本速記는 帝国議会를 中心으로 하여 基盤을
鞏固하고 地方議會에의 進出로 次次 幅이 넓어지고 또한 새
로운 利用分野로 新聞社의 電話速記가 始作되었으며, 따라서 速記
士의 數도 漸次로 늘어났다. 速記法式도 徒來의 田鎖綱紀式以外
에 두서니가지가 考案 發表되었으며 速記実務가 순조로이 發展한
時期이다.

二・第三期는

大正時代 (1912-1925) 일대 이時期는 速記가 教育面으로 發展한 時代이다.

貴族院 衆議院 兩院에 각각 速記士의 養成機關이 생김으로써 速
記教育이 一層 活潑하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法式이 發展됨에 따라 速記의 一般에 対한 普及이
積極的으로 行해졌다.

한편 速記料金의 協定問題를 發端으로 日本速記協會가 생겼으며
이로서 日本速記界의 統一이 이루어진 時期라고 할 수 있다.

三・第四期는

昭和初年 (1926-1945) 부터 二次大戰까지를 잡아본 時期
이다. 이期間동안에 日本速記界는 裁判記錄과 速記士法으로써
活路를 開拓하려고 했으나 成功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一般新聞이나 雜誌 系統에서 坐談会가 盛行하여 速記의
커다란 需要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中等學校를 中心으로
普及을 始作했으며 通信教育도 始作되었다.

日本速記協會에서도 技術試驗을 施行하여 技術水準의 向上에 努
力하고 한편으로는 速記의 '科学的'研究도 行하여 졌다. 이期間
을 通하여 보면 速記界가 内部의 整理에 努力한 時期라고 볼수
있다.

□ · 第五期

世界第二次大戰末期 (1945-1968) 부터 今日까지의 期間이
다. 이 期間에는 日本速記界가 美國文化의 影響을 받아 크게 飛
躍하게 되었다.

大望하던 裁判記錄도 速「타이프」라는 機械速記를 採用하게 되
어 実務를하게 되었으며 그 外에 速記教育의 拡大하든지 速記法
式의 普及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어느 時期보다도 많은 速記士가
活躍하게 되었다.

또한 錄音器나 「타이프라이터」가 速記實務에 補助로서 登場하
게 되었으며 「텔레타이프」等 文字電送機도 電話速記와 兼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速記關係에 機械가 積極的으로 活用된 것이 이 時期의
커다란 特色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日本速記文化 興隆의 時代

라고 말할 수 있다.

2. 日本速記의 法式構成

以上과 같은 過程을 거쳐온 日本速記는 그 種類에 있어서
現在 70 餘 法式이 있다.

이를 流派別로 大別하면 正圓派 斜線派 楕圓派等 3種類로서
正圓派는 簡何學의 線을 利用한 것으로서 最初로 實用化한 것이
田鎖式이 「pitmon」系의 「grohom」式을 基礎로 하였는바 그
後 改訂 增補되어 왔다. 現在 널리 使用되고 있는 衆議院式
參議院式 慶崎式 中根式 早稻田式 等이 그것이다.

斜線派는 「ロ-マ」字의 筆記体를 整理하여 左下·右上의 斜線
畫를 基礎로 하였다. 田鎖系의 若林系에 依하여 一部 利用되어
毛利式에 이르러 全面적으로 採用되었다.

毛利式이 基礎로 한 것은 「Faulmann」式(獨語)이다. 現在 實
用化하는 것은 毛利式뿐이다.

橢圓派는 正圓派와 斜線派를 折衷한 것으로서 이 派에 屬하는
것으로는 宅間式 酒井式等이 있는데 이는 「gregg」式(英)을
基礎로 하였다. 또한 正圓派의 系統에 屬하는 側에서도 橫的
으로 使用하려 하여 田鎖系의 森山式 中根系의 國字式等이 現在
이를 使用하고 있다.

3. 日本速記界의 現況

ㄱ. 概 観

日本 全体의 速記人口를 보면 既成速記士가 大略 5千餘名 으로 推算되어 全國 各種 教育機關에서 速記를 習得中인 者는 約 2万餘名에 達하고 있다.

1967年度에 日本速記協会에서 實施한 第3回 檢定試験의 志願者數는 3千 4百 3名이었고 이 中에 合格者數는 千 2百 58名에 達하였는데 이는 日本速記界의 急激한 發展相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다.

日本速記界는 速記의 社會的 評価의 向上을 因謀하기 为한 文化團體인 社團法人 日本速記協会와 速記人의 地位向上과 福利增進 을 因謀하기 为한 各地方의 速記士会와 이를 聯合한 全國速記士團體聯合會의 二元的인 速記團體의 組織을 中心으로 活動하고 있다.

ㄴ. 速記利用分野

専屬速記士를 두고 있는 機関으로서는 衆議院事務局, 參議院事務局, 東京地方裁判所等에 각각 150餘名의 速記士가 있고 民間機關으로서는 共同通信의 本社外 全國 各地의 支社 支局을 包含하여 總計 150餘名 其他 官廳에 있어서는 各地方裁判所 高等裁判所 都・道・府・縣・市議會等 地方議會와 民間에 있어서는 朝日。

毎日 読売를 為始한 各新聞社 放送局等에 많은 專屬速記士가 活躍하고 있으며 自由速記士로서는 速記事務所를 두고 있는 것이 普通이다.

速記事務所中에는 株式会社도 있으며 專屬印刷所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다. 그 需要의 筆題은 雜誌關係와 各種團體의 總會等을
担当하고 있으며 特히 医學專門速記事務所라는 것이 있어서 速記
의 專門化를 期하고 있다.

速記事務所의 代表的인 会社를 보면 共立速記 印刷株式会社 東京速記株式会社 澤速記株式会社 「아다고」速記株式会社等이 있는데
이들 会社는 各各 20名内外의 速記士를 雇用하여 速記 依頼가
오면 全體人員이 動員되어 10分 乃至 20分交代로 速記錄을 作成하고 協定된 速記料金을 받고 있다.

共立速記印刷株式会社의 境遇는 直接 孔版印刷施設까지 設備하여
需要者의 要請에 따라 速記錄을 印刷 納品하고 있다.

以上은 職業速記士의 分野이나 實地 速記의 習得者가 모두 職業
速記士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速記라는 길이 다른 職業
보다도 日常生活에 여러가지로 活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日本에 있어서도 欧美式執務法의 採用으로 一般官厅이나
實業界에 있어서의 事務的 利用이 盛行하고 있다. 그것은 書類나
往復文書의 口述速記이며 「타이피스트」를 兼む 文書作成事務가

넓어진 것이다.

秘书가 되면 電和나 伝言 或은 庵接 交渉等의 「メモ」에도
活用되고 있다.

二. 速記教育現況

専属速記士養成機關을 가지고 있는 機関은 衆議院 參議院과
裁判所가 있다. 国会速記士養成所의 卒業生이 모두 国会速記士가
되는 것은 아니다.

數字的으로 보면 그以上の者が 地方議회나 新聞社 通信社等에
就職하고 있다. 現在 參議院에서는 速記士의 公募를 하고 있지 않
으나 衆議院에서는 一般公募의 길이 려있어 衆議院의 速記士는 養
成所出身만이 아니다.

最高裁判所書記官研修所의 速記研修生은 卒業后 모두 裁判所速記
官으로 採用되어 現在 裁判所速記官은 모두 研修所의 卒業生만으
로 構成되어 있다. 그것은 裁判速記의 執務法이 速記打字의 使用
을 前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民間速記学校로는 速記를 專門으로 하고 있는곳이 東京에는 早
稻田速記学校와 中根速記学校 大阪에 山根速記学校 神戸에 神戸速
記学校 弘田에 川村速記学校等이 있다. 이들은 本科1年과 研究科
1년의 課程을 두고 있다.

이中에 中根速記法式은 中根速記協會를 組織하여 全國에 支部를

두고 있으며 특히一般学生에의普及에努力하고 있으며文部省
後援으로 全国高等学校 中根式速記競技大会를 열고 있다. 또한 早
稻田速記法式에서는 早稻田速記普及協会에서 「早稻田速記講座」를
刊行하여 通信教育에 確固한 基盤을 가지고 있다.

最近에는 日刊 早稻田速記「레티오」講座에 依해서 「레티오」放
送도 活用하고 있으며 早稻田速記의 通信講義受講志願者가 年間
100万에 達하고 이中에 4.50万名이 繼続 受講하고 있다.

東京都内 9個出版社에서 速記獨習書가 18種이 나왔는데 이들
獨習書가 67年度에 4万5千卷이 팔렸다.

其他普及에努力하고 있는 速記法式은 다음과 같다.

田嶺76年式 山根式 石村式 慶崎式 牧式 米田式等이 있으며 이들
中에는 成人学校의 科目인 秘書養成課程에서 教授하고 있는 것도
있으며 또 短期講習회나 私塾도 많다. 또 一般教育中에는 高等学
校商業科에 2個年間 每週 2時間의 選択科目으로 速記가 採択되
고 있으며 中学校의 選択科目中에도 速記를 採択하고 있는 学校
가 많다.

1967年度에 日本速記協会에서 實施한 日本速記教育実態調査集
計를 보면 다음과 같다.

	教育機関数	学 生 数
一般教育機関	51	3,953
大学速記教育状況	14	1,236
高校 "	232	11,750
計	297	16,938

二、全国速記士人員數 및 就業分布 (資料未備로 1965.2.4 現在)

(1) 全国速記士人員數

手筆速記士 3,500 餘名

法院從事打字速記士 600 餘名

計 4,100 餘名

註；国会速記者採用基準合格者外 同等以上の 速記技能을 가진

者は 国会速記士를 包含하여 全体의 約 20% - 30% 程度로

推定함.

(2) 速記法式別就業比率 (全国70餘種)

衆議院式 14.9

參議院式 14.0

速記打字式 (裁判所) 18.0

早稻田式 19.4

中根式 14.6

態崎式 4.8

田嶺式	3.1
佃式	2.4
山根式	1.4
日速研式	0.4
其他 (60餘種)	7.0

(3) 職種別就業分布

議会關係 (国会外地方議会)	1,106 名
裁判所關係	617 名
新聞通信社。放送關係	857 名
速記会社事務所關係	318 名
速記学校教授所關係	41 名
一般会社。其他	576 名
計	3,415 名

第2節 日本速記協会의 実態

1. 沿革 및概観

日本速記協会는 国民의 書記能力을 增進하고 記錄事務의 能率化를 期하기 為하여 速記의 普及發達과 그 利用分野의 開発에 힘쓰며 速記技能者의 技術水準 및 社会的 評価의 向上에 供하는 諸事業을 行하여 日本의 文化發展에 寄与함을 目的으로 1920年 5月에 結成되었다.

1882년 田鎖綱紀에 依하여 日本速記가 最初로 発表된 以
來 1920年 日本速記協會가 結成하기까지의 速
記團體의 興亡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89年 11月 速記者懇談會結成 1892年 7月 解散
1894年 10月 速記同志會結成 1903年 解散
1907年 9月 日本速記會結成 1912年 4月 活動停止
1918年 5月 中央速記會結成
1919年 4月 東京速記協會結成
1920年 5月 中央速記會와 東京速記協會가 合併하여 日本速
記協會結成

1918年에 結成된 中央速記會는 衆議院의 少壯速記士가 中心
이 되어 結成하였으며 1919年에 結成된 東京速記協會는 貴族
院의 有志速記士가 中心이 되어 結成하였던바 1920年 兩團體가
合併하여 現在의 日本速記協會가 結成된 것이다.

當時 日本速記協會가 結成된 動機는 料金協定이 重要目的이 있다.
當時의 速記料金은 每時間當 3円이었는데當時의 物価水準에 比
하여 番価格이었는데도 速記士끼리 競合하는 者가 있어 이점을
解決하기 为하여 1920年 4月 東京速記協會主催로 全國速記士大会
를 開催하였다. 그 当時 國會兩院과 新聞 通信社 其他 一般速記
士等 30餘名이 모여 料金協定에 關係하여 討議其結果 全體速記

士가一致團結하여 速記界의共同目的을為하여活動하는것이
必要하다는結論을내려結成한것이即日本速記協會인것이다.

現在의日本速記協會는純粹한文化團體로되어있으나設立當時
의出發目的은速記士의地位向上共同利益의增進待遇改善等으로
되어있어同業者組合같은形態이있다.

日本速記協會創立當時의事業內容을보면技術研究 및獎勵速記
料金에關한協定,業務및人事의紹介雜誌発刊功勞者の表彰
其他必要한事項으로되어있다.

1920年30餘名으로結成된日本速記協會는2次大戰以后에急
激히擴張된速記需要로말미암아會員의增加와事業의擴大量
이독하게되어1965年10月純粹한文化團體로서의社團法人으로
設立變更하게되었다.

現在의社團法人日本速記協會의會員은1,300餘名에達하고
으며全國26個重要都市에支部를設置하여運營하고있다.

2. 1968年度日本速記協會事業計劃을보면 다음과 같다.

ㄱ. 速記에關한調查研究

(1) 速記教育에關한實態調查

全國高等学校와速記教育機關等의速記教育또는그普及
의實態調査를行하여今后速記教育普及向上을為한指針의
資料로整備한다.

(2) 速記活用에 대한 実態調査

速記士의 実態調査 및 速記技術의 広範의 活動分野의 開發
을 為한 資料를 準備한다.

(3) 海外의 速記事情調査를 適切히 行는다.

レ. 速記相談事務의 実施

速記學習 또는 利用에 대한 相談에 있어 前年度에 繼続해
서 適切한 助言 指導를 行하여 더욱 相談事務에 万全을 期한다.

二. 研修会 講習会 講演会 記念行事等의 開催

全國 議事記錄事務研修会를 前年度와 같이 都。道。府。縣。
市 및 町。村議会를 包含하여 記錄事務 従事者의 參加를 要請 記
錄事務從事者의 知識 技能의 向上을 期한다.

講習会 講演会 記念行事等을 必要에 依해서 行한다.

三. 月刊誌等의 刊行

月刊誌「日本의 速記」를 年 12回 編纂発行하며 「会議録用字
例」「速記技能検定受験의 要領」또한 「検定試験受験의 案内」其他
速記関係 図書의 出版을 한다.

四. 技能検定의 実施

文部省 后援에 의하여 全国 主要 8個 都市 以上에서 2回
의 速記技能検定을 実施한다.

五. 競技会 및 奨励試験等의 実施

速記技能水準의 向上과 速記의 普及을 期하기 為하여 競技
会 또는 低速度를 中心으로 한 奨励試験을 実施한다.

八. 表彰

速記功勞者 競技会入賞者 또는 速記技能検定 各級에 있어
成績이 優秀한 者에 表彰을 行한다.

3. 日本速記協会 1968年度 豫算 및 1967年度 損益計算은 다
음과 같다.

7. 日本速記協会 1968年度豫算

收 入 部

項目	豫 算 額	備 考
会費収入	2,100,000	
特別会員費	480,000	800×600人
普通会員費	640,000	1,600×400人
維持会員費	120,000	2,400×50人
賛助会員費	800,000	3,200×250人
入会費	60,000	200×300人
事業収入	6,408,000	
検定収入	3,000,000	600×5,000人
研修収入	1,400,000	2,000×700人
出版収入	1,860,000	
特別事業収入	148,000	
手数料収入	150,000	
広告収入	120,000	
寄付金	100,000	
雑収入	20,000	
利子収入	20,000	
合 計	8,918,000	

支 出 部

項目	豫 算 額	備 考
事 業 費	5,891,000	事務費，人件費는經營費에
検定費	1,970,000	計上要旨
研修費	1,040,000	
月刊誌発行費	1,240,000	
広告費	45,000	
調査費	100,000	
出版費	1,396,000	
特別事業費	100,000	
經 營 費	3,027,000	事務局長 26,000 × 14 円 月
事務所費	707,000	{ 事務員 A 20,000 × 14
人 件 費	1,120,000	{ B 18,000 × 14
会議費	62,000	{ C 16,000 × 14
通信費	240,000	
交通費	48,000	
印刷費	220,000	
消耗品費	78,000	
涉外費	24,000	
備品費	100,000	
旅 費	48,000	
表彰費	170,000	
支部助成費	120,000	
諸雜費	20,000	
豫備費	70,000	
合 計	8,918,000	

1967年度損益計算書

自 1966年10月 1日

至 1967年 9月 30日

1. 収入 部	5,817,796	■. 費用 部	6,170,724
1. 会員収入	1,164,296	1. 事業費	3,983,665
2. 検定収入	1,488,869	(1) 検定費	1,263,282
3. 研修収入	1,524,275	(2) 研修費	1,267,670
4. 出版収入	1,177,279	(3) 機関誌発行費	850,272
5. 手数料収入	135,655	(4) 広報活動費	97,900
6. 広告収入	101,000	(5) 調査費	55,523
7. 寄付金収入	125,777	(6) 出版費	449,018
8. 受取利息	24,521	2. 経営費	2,187,059
9. 雑収入	76,124	事務所費	421,060
		人件費	552,550
		会議費	87,368
		通信費	228,345
		交通費	87,950
		印刷費	223,596
		消耗品費	63,980
		涉外費	16,000
		備品費	15,170
		旅費	40,360
		表彰費	177,240
		支部助成費	106,192
		公祖公課	11,638
		諸雜費	104,996
		豫備費	
		減価償却費	50,614
		■. 当期損失	△ 352,928

4. 速記技能検定試験

日本速記協会의 最大事業의 하나인 速記技能検定試験에 있어
任意 團體當時에 実施한 例를 概括해 보면 1925年에 速
記技術試験要綱을 制定하여 檢定試験과 奨励試験으로 区分하여
実施하였다。

檢定試験에 있어서는

A級 (10分間3,200字 反文時間13倍)

B級 (10分間2,900字 反文時間12倍)

C級 (10分間2,600字 反文時間10倍) 等의 等級을 가
지고 実施해 오다가 1965年 社團法人으로 発足한 以後
부터는 文部省의 後援을 얻어 速記技能検定試験을 全國 主要
8個 都市以上에서 実施함으로써 檢定試験의 権威를 確固
함과 同時に 全國的体制整備를 確立하게 된 것이다。

社團法人으로 発足된 以後 1966年과 67年 2年에 걸쳐
서 3회의 檢定試験을 実施한 結果 速記法式別 合格者の統
計와 速記技能審査基準은 다음과 같다。

才1回～才3回検定合格者法式別統計表

速記法式 等級	1	2	3	4	5	合計
	320字	280字	240字	180字	120字	
早稻田式	67	103	170	359	686	1,385
中根	41	77	128	103	207	556
山根	11	16	27	42	125	221
衆議院	20	2			3	25
參議院	9	11	1	5	9	35
日速研	3	10	10	22	39	34
石村			5	4	3.2	4.1
田鎖	1		2	5	19	27
熊崎			2	5	13	20
新熊崎					6	6
가나		1	7	16	26	50
長商式	1	1	1	8	12	23
飯商式				7	10	17
유니온				10	11	21
J S A				2	5	7
泉				1	5	6
高機			2	1	1	4
佃			1	1	1	3
所沢	1		2	1	2	4
国字			1		1	4
米田			2		1	3
荒浪					1	1
木村					1	1
毛利			1			1
酒井			1			1
略				1		1
速打字	1					1
不明	1					1
	156	223	351	593	1,216	2,549

速記技能審査基準

程 度	領 域	内 容		許容失点
5 級	노트나 예 모에 速記를 실技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	速 度 実技 翻 文 正 確 度 知 識	分速 120字를 基準하여 5分間 朗讀한 것을 速記할 수 있다。 이 速記한 것을 60分以内에 普通文字로 翻文 할 수 있을 정도 翻文에 있어서 辞典 參考書를 使用하지 않고 96%以上 正確을 期할 수 있을 정도	24字以内
4 級	쉬운 論說이나 原稿를 速記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	速 度 実技 翻 文 正 確 度 知 識	分速 180字를 基準하여 5分間 朗讀한 것을 速記할 수 있다。 이 速記한 것을 60分以内에 普通文字로 翻文 할 수 있을 정도 翻文에 있어서 辞典 參考書를 사용하지 않고 97%以上 正確을 期할 수 있을 정도	27字以内
3 級	論說·電話를 速記할 수 있고 翻文를 도울 수 있을 정도	速 度 実技 翻 文 正 確 度 知 識	分速 240字를 基準하여 5分間 朗讀한 것을 速記할 수 있다。 이 速記한 것을 60分以内에 普通文字로 翻文 할 수 있을 정도 翻文에 있어서 辞典 參考書를 사용하지 않고 97%以上 正確을 期할 수 있을 정도	36字以内
2 級	會議·座談講演의 速記를 捕佐할 수 있을 정도	速 度 実技 翻 文 正 確 度 知 識	分速 280字를 基準하여 10分間 朗讀한 것을 速記할 수 있다。 이 速記한 것을 130分以内에 普通文字로 翻文 할 수 있을 정도 翻文에 있어서 辞典 參考書를 사용하지 않고 98%以上 正確을 期할 수 있을 정도	5字以内

1 級	会議・座談 講演을單独으로速記할 수있 을程度	実技	速 度	分速 320字를 基準하여 10分	64字以内
			翻 文 正確度	間 朗誦한것을 速記할 수 있다。 이 速記한것을 130分以内에 普通 文字로 翻文할 수 있을程度 翻文에 있어서 辞典·參考書를 使用하지 话고 98%以上 正 確을 期할 수 있을程度	

採点은 「1字失点」을 原則으로 하여 行하여 진다。 異字 脱字
 判誤 不明瞭한字 同音異字는 1字 1失点。 誤訳 脱訳은 訂正한字數로
 부터 失点으로 計算한다。

5. 議事記録事務研修会

速記士等 記録事務에從事하는者の知識技能의向上 諸般 記錄様式의統一을 図謀하기 為하여 日本速記協會는 関係團體와共同主催로 年 1 回씩의 全國議事記錄事務研修会를 開催하고 있다。

1967年 度에 実施된 才 19回 全國議事記錄事務研修会는 全國에서 650名에 達하는 記録事務從事者 的 參席으로 10月 18日부터 3日間에 걸쳐 東京에서 開催되었다
當時의 日程은 다음과 같다。

第19回全国議事記録事務研修会日程

第1日 10.18 (木)	10.00	開講人事 全国都道府議会議長会事務局長 全国市議会議長会事務局長 全国町村議会議長会事務局長 社團法人 日本速記協会理事長
	10.30	会議進行方法에 대해 社團法人 日本速記協会研修部長
	12.00	速記者에 대한 感想 講師 参議院前記録部長 佐藤忠雄
	13.00	休憩
	15.00	同音語와 頻音語 講師 文部省国立国語研究所 田中草夫
	16.00	議会事務에 대한 質疑應答 講師 国立国会図書館 西沢哲四郎
	16.30	分科会 가이드ス
	第2日 10.19 (木)	人事 参議院記録副部長 福地和正
	10.15	研究発表 대마·会議録의 質的向上과 迅速化作成

		事例発表 (1)三郷市 古寺秀夫 私見発表 (2)吳市 中谷良通 (3)参議院 山辺和夫
11.40	分科会 티다 決定	
12.00 1. 13.00	休 憩,	
		分科会 方 1 分科会 (県) 方 2 分科会 (市) 方 3 分科会 (町村) (研究発表에서 提起된 問題를 中心으로 한 討議) (経験交流 意見交換)
方 3 日 10.20 (金)	10.00 11.30 12.00	分科会 報告 (助言包含) 今回の感想 次回への 希望 閉 会

6. 出版物紹介

日本速記協会에서 出版되는 刊行物은 다음과 같다。

◎国会会議録用字例

衆議院 參議院記録部編 国会는 勿論 都道府県市町村議회의
記録事務에 従事하는者 其他 議会關係의 職員
一般速記実務家 監視厅 教養課職員 教育者 學習者에 便利 利
用된다。

◎昭和40年 国会用語集 昭和41年国会用語集

衆議院 參議院記録部編

衆參兩院의 速記錄에서 記錄事務遂行上 不可缺한 新語를 많이
収録하고 이에 解說을 붙인 專門語集 速記 実務者나 速記學
習者 上級生의 必要한책이다。

◎速記技能検定試験 受験案内

一般學習者를 為하여 速記의効用 速記技能検定試験의 内容等이
親切하게 説明되어 있다。 學習者は 勿論 速記를 始作해 보
려는 者에게도 좋은 指針이 되는 案内書이다。

◎地方議会横書様式 例案

地方議会에 奉職하는者 또는 議会職에 뜻을 두고 있는者들의
必要한책이다。

◎日本의 速記

本誌는 日本速記協会의 唯一한 月刊誌로서 國內速記界의 動向
海外의 速記事情研究紹介 速記에 關한 研究 隨想 検定試験

豫告 또는 그 합격者発表 學習者 및 卒業生의 座談会 文部大臣賞 日本速記協會賞의 発表 受賞式이나 其他의 「ニュース」, 各學校의 速記部探訪, 同音語問題等 多彩로운 内容으로 되어 있어 記錄事務를 担当하는 者에게는 勿論 速記學習中에 있는 者에게도 有益한 協会誌이라

◎議会의 記錄事務에 对해서

福地和正著

長期間 議会의 記錄事務에 從事하고 있는 著者の 豊富한 經驗을 生生하게 記述한 労作으로서 速記의 定義 速記의 歷史 会議錄의 定義 速記事務上의 問題點을 알수있고 現職速記士나 教育者 또는 練習中인 學生들의 必讀書이다。

◎議会를 비치는 真鏡

별리암·로著

勧富啓之助訳

英國 議會速記에 關한 統一文獻의 翻訳物로서 議會關係의 記錄事務에 從事하는 者는 '勿論 各界速記才 1線에서 活躍하는 速記士나 速記學習中인 者等의 教養書이다。

◎才 1~8回全國議事記錄事務研修会議錄

◎地方議會議事記錄員必携法規類集

◎昭和4年全國速記教育実態調査表

才 3節 速記士会와 速記料金의 協定

前述한 바와 같이 日本速記界는 社團法人 日本速記協會와 各地

方의 速記士会를 聯合한 全国速記團體聯合會의 二元組織으로서
社會活動의 中心을 이루고 있는바 日本速記協會는 純粹한 文化
團體로서 그 目的과 主要事業은 前節에 記述한바와 같으며 이
와 別途로 組織되어 있는 速記士会의 目的과 事業內容을 東京
速記士会의 例로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目的

會員相互間의 親和協同과 速記士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向上

2. 事業

가. 會員速記士의 信用과 責任을 保証하기 為한 等錄名簿의 発行

나. 速記料의 協定

다. 會員의 教養, 親睦, 共濟, 鎮吊等에 必要한 事項

라. 速記業務에 必要한 條件의 確立

마. 速記業務에 關한 試驗과 競技

바. 速記業務와 人事에 必要한 連絡

사. 關係團體와의 連絡과 協力

아. 其他 必要한 事項

以上의 事業中 速記料에 對한 協定은 各地方速記士會가 各其 그
地方의 實情에 따라 定하고 있는 바 東京速記士會의 協定速記料는
다음과 같다.

◎普通速記料 (1時間分) 6,000円以上

◎特例料金

1. 特殊한 내용인 경우 (速記料의 5割增以上)
2. 特別히 反文의 時急을 要할 경우 (速記料의 10割增以上)
- 3.同一速記事務에 特別히 速記士 2人以上을 要求할 경우
(速記料의 5割增以上)
4. 2部以上의 速記録作成을 要求할 경우 (速記料의 5割增以上)
5. 特別히 原稿枚数에 依하여 計算할 경우 (200字原稿 1枚
120円以上)
6. 地方出張의 경우 (旅宿泊登外에 出張日数마다 速記料 1時間分
以上의 手当)
7. 取消의 補償
 - 가. 当日取消分 (協定約束時間 速記料의 5割以上)
 - 나. 前日取消分 (速記料 1시간分의 4割以上)

※ 1시간未満은 1시간으로 計算함

以上의 協定速記料는 1966年10月1日에 定하여짐 것으로서
東京速記士会는 今年中에 1시간당 1萬円以上으로 引上할 計劃을
세우고 있다。

附錄 6-1 社團法人 日本速記協会定款 (抜萃)

6-2 社團法人 日本速記協会定款施行細則 (抜萃)

7 東京速記士会会則

第4節 裁判 速記와 速記打字의 実態

1. 裁判速記의 概觀

2次大戰後 日本速記界에는 오랜宿願이던 裁判速記를 実現하게 되었다。

1948年 才 2回国会에서 公判中心主義의 刑事訴訟法이 成立될 때에 訴訟手続에 関하여 刑事訴訟規則을 制定하여 1949年 1月 1일부터 施行하게 되었는데 그 規則에 依하면 才 40條에 「證人 鑑定人 通訳人 모든 翻訳人을 訊問할 때에는 速記士로 하여금 그 内容을 筆記시키며 또는 錄音裝置를 使用하여 錄取할 수 있다。」

또한 同規則 才 47條에 依하여 公判庭에 있어서의 訊問及陳述에 있어서도 才 40條 規定을準用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当時 聯合國最高司令部의 強力한 指示에 依하여 日本最高裁判所에서는 美國의 裁判所速記方法을 採択하여 機械速記로 裁判速記를 하기로 方針을 세웠던 것이다。

2年間에 걸쳐 速記打字를 研究한 最高裁判所에서는 1950年 10月에 速記研究室을 設置하여 裁判所 職員中에서 10名의 研究生을 技習練習을 시켰던 것이다。

그것이 現在의 最高裁判所書記官研修所에 依한 速記士養成의始初이다 打字機의 研究期間 2年과 練習期間 3年 合하여 5年間의 試用期間을 要한 最高裁判所는 비로소 自信을 갖게

되어 1952年度預算에 養成所置에 所要되는 約 1,300餘
万円을 計上하였다。

그리고 裁判速記의 全面早期實現을 期한 目的으로 同年2月
才2期生 20名을 入所시켰던 것이다。

그후 才1期生의 一部는 다음해 1953年1月에 東京高等裁
判所의 法廷에서 執務하는데 成功하였다。 또한 同年부터는
20名의 部内 募集外에 새로이 高等學校 卒業生 50名을
一般公募하였다。

그리고 다음해부터는 每年 8百名을 入所시켜 速成養成하
는데 까지 이트더 그卒業生을 全國 48個所의 地方裁判所 8
個所의 高等裁判所에 年次의 으로 配置하게 되었다。

1957年才26回国会에 있어서는 裁判所法의 一部를 改正하
여 裁判所速記官制度를 두게 되었다。同改正法律案審議當時 政
府當局에서 밝힌 바에 依하면 全國에 約 1,000名의 速記
官을 配置할豫定으로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法廷에서는 既히 書記官이 入会하여 調書를 作成하고
있으니 書記官과 速記官의 權限을 어떻게 調整하는가 하는
問題가 提起된 바도 있었다。

또한 速記打字에 關하여는 職務의 能率化를 困謀하기 為하
여 全部를 反文하지 않는다는 方針을 最初부터 議定하고 있
었다。

이 데한 点에 關하여 慎重한 檢討가 繼續되어 1960年

4月1日에 民刑 両訴訟規則을 改正하였다。

거기에 依하면 書記官은 당연히 速記錄을 引用하여 調書의 一部로 하되 速記打字한 것은 反文하지 않고 그原本으로만 引用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로써 速記打字의 本來의 特色을 發揮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2. 速記打字의 実態

速記打字라고 하는 것은 「ローマ字会」의 川上 覧이 「日本語用의 速記機」라 하여 既히 1944年에 特許를 얻고 있었던 것이다.

中央의 「※」의 「キ」를 中心으로 左右 10個式의 「キ」로 構成되어 있으며 그의 全体를 한벌에 누르면 带状의 (卷紙) 종이에 다음과 같이 一列로 써힌다.

Y T H K S A I O T K ※ I N O I A S K H T Y 그中 必要한 「キ」만을 끌라서 치는데 그 떠할때 左手는 「KA」에 依해서 가(カ)를 날리내고 右手는 「AK」에 依해서 가(カ)를 날리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キ」에 韶는 文字는 다음과 같은 「キ」를 組合한 것을 가지고 나타낸다.

U = I O

E = A O

N = H S

M = K S

R = T K

W = T K S

G = H K

Z = T S

D = T H K S

B = T H

P = T H K

其他 日本語의 拼音 長音等의 形도 定하여져 있고 이것이 速記打字의 基礎文字로 構成된다. 따라서 거기에는 徒來의 記線速記와 같이 個性的인 混亂이 일어날 餘地가 存在하지 않는다.

여군다나 速記打字의 경우도 記號速記方式의 경우와 똑같이 略字를 가지고 補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 略字의 치는 法도 定하여져 있으며 例를 들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나 (私)

T K S A T K

있습니다 (あります)

Y A O T K

참으로 (まことに)

K S A T

적어도 (少なくとも)

S I N

함에도 不拘하고 (にもかかわらず)

T I N K

積極的

S A O I N O A T

株式会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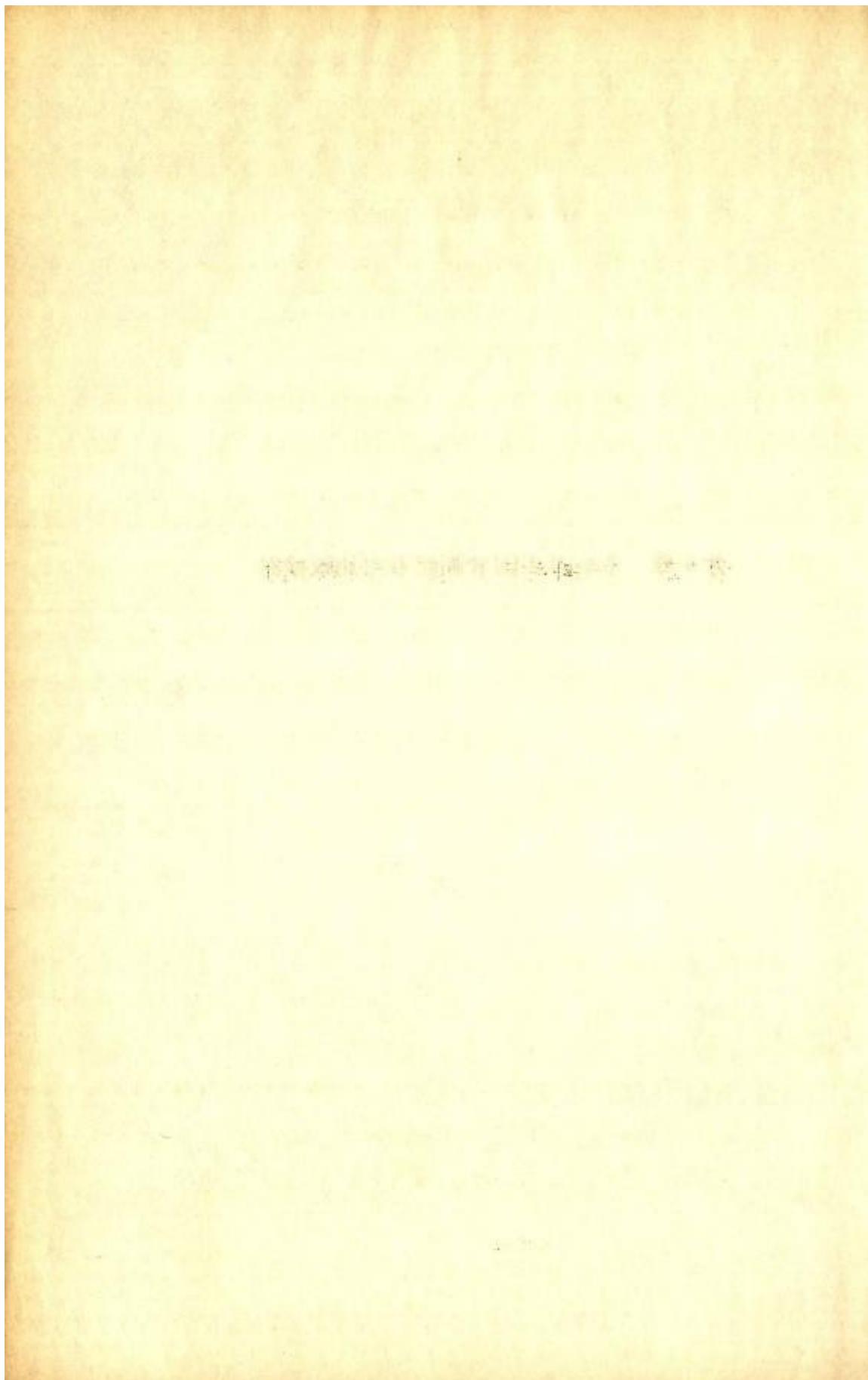
T K I A K H Y

이러한 것은 個人의 用法을 防止할 수 있고 이것에 依한 記号文이 그냥 그대로 다른 速記士가 읽을 수 있는 狀態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裁判速記에 있어서 反文하지 않고 速記原文을 그대로 調書에添付함으로써 速記打字의 特色을 發揮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速記打字에 对하여는 一部에서 聽業病 (書痙, 腱鞘炎, 筋膜炎) 問題가 提起되어 論難이 되고 있다.

第4章　우리나라의 国會制度 와 의比較検討



第4章　우리나라国会制度와의 比較検討

第1節　機　構

日本国会는 衆參兩院 共히 事務局에 記錄部를 두고 그 밑에
速記室 1課 2課 3課 4課 외 速記者養成所를 두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회가 議事局 밑에 단하나의 速記課 외 速記士養
成所를 두고 있는데 比하면 龐大한 機構이다. 勿論 그 構成人
員이 우리나라国会의 速記職 90名에 比하면 日本衆議院速記職
155名 參議院速記職 134名이라는 人員數의 差異에서도 龐
大함은 当然하다 하겠으나 業務의 分量面으로 볼때는 別差異가
없다. 即 우리나라가 단課에서 处理하는 業務를 日本에서는
4課에서 나누어 处理하는데 不過하다. 그만큼 日本의 記錄事務
는 하나의 独立機構로서 正確과 迅速을 期하는 能率本位에 重
点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가 記錄事務의 機構를 拡張하지 않는 것은 国家
豫算을 節約한다는 長点은 있겠으나 速記라는 特殊한 技術을 要
하는 職務의 性格上 또는 速記로 부터 印刷配付까지의 複雜한
過程面에 있어서 보다 正確을 期하고 보다 迅速을 期하기 为
해서는 日本記錄部와 같은 機構拡大가 緊要할 것이다.

第2節　會議錄編輯校正　印刷制度

日本国会에서는 兩院이다 그職制上 編輯室을 担当하는 課나

係가 없는 것이 特異한 点이다. 우리나라国会에서는 1個의 速記課가 速記係와 編輯係로 分類되어 速記로부터 編輯 校正 印刷 配付까지의 複雜한 過程의 業務를 遂行도록 되어 있으나 日本国會에서는 各院共히 独立的인 機構로서 4課라는 龐大한 速記課를 두고 있으면서도 編輯이라는 別途의 担当分野가 없이 速記監督이 速記士로부터 넘어 온 原稿를 校閱하고 2, 3名의 編輯員이 附錄이나 報告 乃至 參照等 法律上 記錄外掲載物을 編輯함으로써 速記課의 業務 나아가서는 記錄部의 業務는 끝이 나는 것이다. 나머지 校正 印刷 配付業務는 他部에 屬해 있는 印刷課에서 担當 完遂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記錄과 印刷를 厳格히 区分하여 速記課에서는 오직 記錄業務에만 热中케하고 印刷過程은 印刷専門家로 構成된 印刷課에서 會議錄문아니라 議院의 모든 印刷業務를 担当케 함으로써 業務의 分野別 專門化를 期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制度와 다른点이라 하겠다.

第3節 會議錄配付 및 保存制度

印刷된 會議錄配付業務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国會에서는前述한 바와 같이 速記課에서 取扱하고 있으나 日本国會에 있어서는 會議錄문만 아니라 議院의 모든 印刷物의 配付를 參議院은 管理部印刷課에서 取扱하고 있고 衆議院은 庶務部文書課에서 一括取扱하고 있는 것이 特異하다 또한 會議錄保存業務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国會는 速記課에서 保存하고 있으나 日本国會에 있어서는 衆議院은

議事部資料課에서 会議録뿐만 아니라 議院의 모든 文書를 一括保存하고 있으며 參議院은 記錄部速記才 1課가 保存하고 있어 保存業務는 그制度上 日本国会内에 있어서도 그取扱方法이 兩院이同一하지않다.

才 4節 速記監督官制度

日本国会에는 速記監督官이라는 職位가 있다. 速記士補로 採用되어 速記監督官에 까지 升進하려면은 大体로 20餘年이라는 長歲月의 經驗과 修練을 要하는 速記職中의 最高職位이다.

速記監督官의 職務는 本會議와 各常任委員會를 專担하게 되는 바 監督官 各者의 專攻分野에 맞는 分科에 固定配置시켜 本會議 및 委員會의 開會中에는 반드시 參席하여 그會議의 経過와 速記하기 어려운 部分을 ◆ 메모 ◆ 하고 이를 速記士에게 提供한다. 速記士들의 原稿作성이 完了되면 速記監督이 自己担当會議의 原稿一切를 引受하여 參觀한 것을 土台로 校閱함으로써 會議錄의 正確을 期하는 重要한 役割을 担当하고 있다.

速記士의 速記執務過程은 個別的으로 단組가 10分이나 20分의 짧은 時間동안 會議에 參席 速記하는 것에 끝치기 때문에 그 會議의 全體的인 호름이나 論議中인 案件의 内容을 잘 把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뿐 아니라 発言者が 모두 正確한 発音으로 洗鍛된 言語만을 使用하는 것이 아니고 地方色이 짙은 各種方言 不分明한 発音 興奮한 热辯外來語의 駆使 模文式文章의 引用

特殊部門의 專門述語等等 各樣各態의 發言이 많으므로 多少의 誤聽이나 誤記를 免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허한 不完全性을 補完하기 為하여 오랜 速記實務經驗者로 하여금 速記監督官의 任務를 科하여 보다 正確한 會議錄을 発刊함으로써 速記業務의 信賴度와 會議錄의 公信力を 높이기 為한 制度가 速記監督制인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速記士가 일단 誤聽이나 誤記를 하였을 경우 이의 訂正이란 記錄者 및 校正員의 常識이나 観見에 依하여 어느程度 바로 잡을수있는 形便이나 日本과 같이 速記監督官制度를 둔다면 速記士로서의 오랜 實務經驗과 또 直接 會議場에 參席 一貫된 會議進行을 傍聽하여 ↗ 메모 ↘ 한것을 土台로 速記士의 誤聽 誤記等은 自信있게 訂正하고 補完할수 있을것으로 料되므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보다 正確한 會議錄作成의 講究策으로 이制度의 実施가 要望되는 바이다.

第5節 調査業務制度

速記業務中에 몇가지 記錄하기 어려운 点이 있다.

그것은 数字, 朗讀이나 法律条文朗讀 專門用語 特히 科学用語나 人名 地名 地方사우리 外來語 新型單語等 인데 記錄하기에도 障路가 있는데다가 発言者自身이 誤聽하는 경우가 許多하고 뿐만 아니라 新型單語나 專門用語같은 것은 辞典에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우리국회速記士들은 일일이 發言者에게 問議하고

發言者가 不在時에는 그의 家庭에까지 訪問하여 確認해 오는
複雜한 節次를 取하고 있으나 日本国会에서는 両院共히 記錄部에
調査係를 두고 各種 統計資料 專門用語 新型單語 審議되는法
律資料 人名 地名等 모든 分野의 資料를 蒐集하여 速記士들에게
協助提供케 하며 번잡을 피하고 正確을 期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것도 速記監督官制度와 아울러 記錄業務의 萬全을 図謀하
는데에 必要不可欠한 制度라 하겠다.

才6節 速記職員 昇進試験制度

速記士들의 速記機能이 오랜 經驗으로서 熟達되는 面도 있지만
는 反面에 惰性으로 因하여 技術이 沈滯되는 경우도 있어 이는
速記技術의 特異한 隘路点이라 하겠다 따라서 日本에 있어서는 所
要年數에 依해서 昇進하드라도 一定한 技術水準에 到達되어 있지
않으면 昇進시키지 아니하는 嚴格한 試験制度를 採択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職制上 一般職 公務員과 같은 単純한 職級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公務員法에 準할 수 밖에 없고 速記職으로서
의 昇進試験이 없는데 比하면 좀 複雜性은 있다 하겠으나 技術
向上을 図謀하기 为해서는 亦是 必要한 制度라 하겠다.

才7節 速記職의 給料制度

日本国会에서 速記職을 一般職보다 越等히 優待하고 있다는 事實
은 才1章의 速記職과 一般職의 給料比較表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現制度는 一般職과 速記職을 同一給料 体系로 하여 다만 速記手当이라는 技術手当制度를 採択하고 있으나 그 僅少한 手当으로서는 到底히 優待라고 볼수는 없다.

速記職은 特殊技術職으로서 上位階級으로의 升進의 餘地가 없을 뿐 아니라 他職으로의 転職조차 不可能하게 되어 있다. 또한 速記術은 그習學이 어렵고 極히 細心한 注意力を 集中하는 精神的重勞動인 것이다. 이러한 与件下에서 長期間同一한 葉務를 되풀리 함으로서 僱怠症과 惰性이 생겨 執務能率의 沈滯을 가져올 念慮가 많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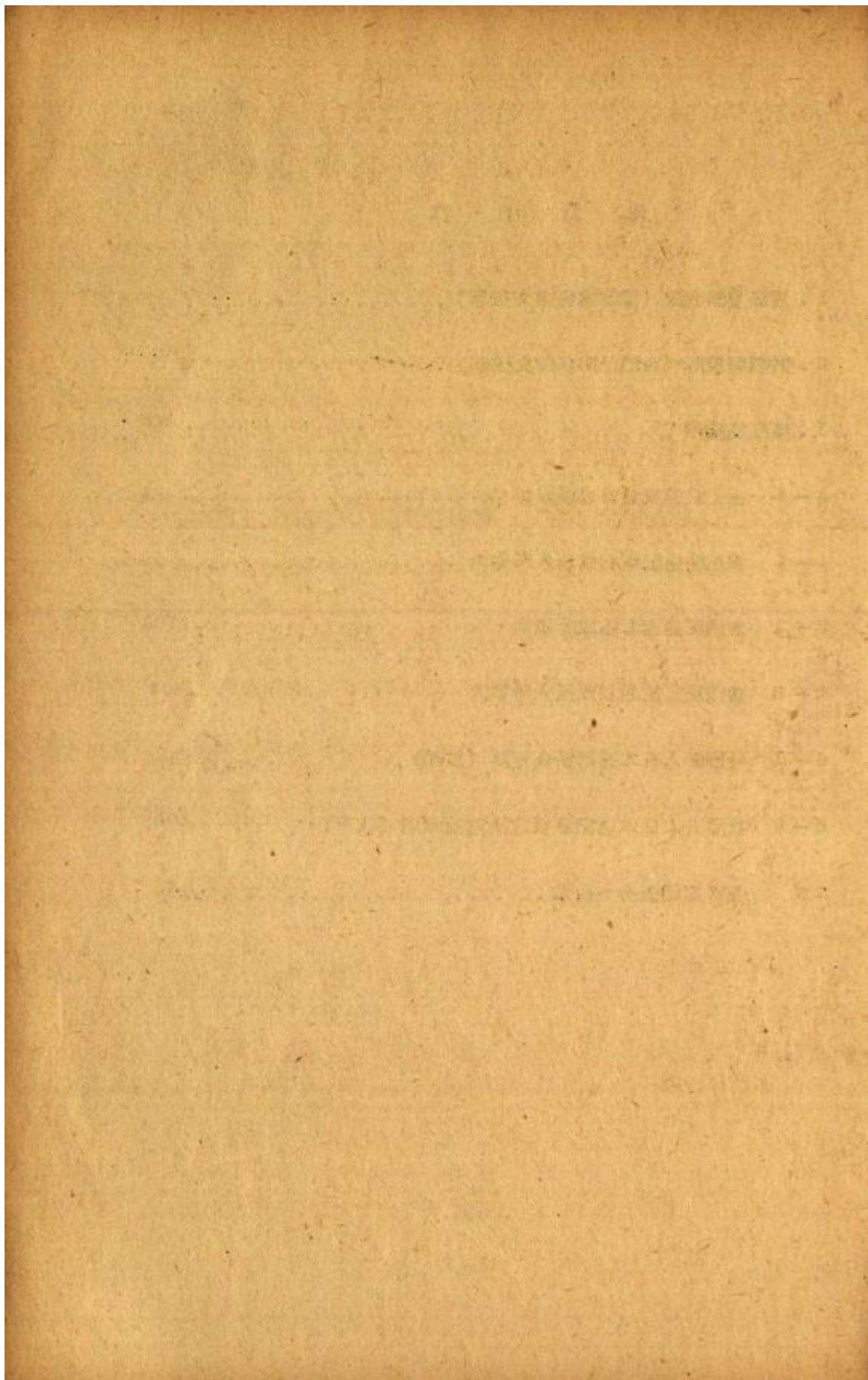
이러한 惰性과 沈滯를 打開하여 執務能率을 最大限으로 發揮케 하려면 무엇보다도 速記職에 대한 处遇를 根本적으로 改善하여充分한 報酬를 支給하여 停止되어 있는 升進 転職 其他 固定된 環境에서 오는 不滿을 經濟的인 面에서의 優待로 解消하여 持持를 가지고 執務에 热中할 수 있게 함이 妥當하다고 思料 되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速記職에 대한 处遇를 改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附录

卷 情

附 錄 目 次

1. 憲法及び国会法（記録関係条文抜萃）.....	87
2. 衆議院規則（会議録関係条文抜萃）.....	88
3. 参議院規則（　　）.....	92
4-1 衆議院速記者養成所規則	94
4-2 衆議院速記者養成所入所案内	99
5-1 参議院速記者養成所規則	101
5-2 参議院速記者養成所入所案内	104
6-1 社団法人日本速記協会定款（抜萃）.....	107
6-2 社団法人日本速記協会定款施行細則（抜萃）.....	108
7 東京速記士会 会則	115



(附錄 + 1)

日本国憲法 및 국회법 (記録関係条文抜萃)

憲法第57条 両議院의 회의는 공개된다. 但 出席議員 3分之2以上의 多数에 依하여 議決하였을 時는 秘密會議를 열수 있다.

両議院은 각각 그 회의 記録을 保存하며 秘密會議의 記録中 特別히 秘密을 要하는 部分以外는 이를 公表하고 一般에 頒布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出席議員의 5分之1以上의 要求가 있을 時는 各議員의 表決을 회의록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国会法第63条 (秘密會議의 記録) 秘密會議의 記録中 特히 秘密을 要하거나 各 院에서 議決한 部分은 公表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附錄 2)

衆議院規則(會議紀錄關係采文抜萃)

第57条(委員会議録等의 閱覧) 委員會는 議員으로부터 委員會記録 其他의 參考資料의 閱覧을 要求하였을 時는 審查 또는 調査에 支障이 없는限 許諾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第58条(委員会議録等의 持出禁止) 前条의 委員會議録 其他 參考資料는 누구든지 議院 밖으로 持出할수 없다.

第61条(委員会議録의 記載事項) 委員會는 委員會議録을 作成하여 다음의 事項을 記載한다.

1. 開会, 休憩, 또는 散会의 年月日時刻
2. 出席한 委員의 姓名
3. 出席한 委員아닌 議員의 姓名
4. 出席한 國務大臣 또는 政府委員의 姓名
5. 委員의 移動
6. 付託案件의 件名
7. 會議에 附한 案件의 件名
8. 講事
9. 表決의 數
10. 決議의 要領
11. 公聴会

12. 証人

13. 参考人

14. 委員의 派遣

15. 報告 또는 記錄 提出의 要求

16. 報告書

17. 其他 重要한 事項

第 62 条 (委員会議録의 保存) 委員会議録은 委員長 또는 幹事가
署名하여 議院에 保存한다.

第 63 条 (委員会議録의 印刷配付) 委員会議録은 印刷하여 各 議員
에게 配付한다.

但 秘密會議의 記録中 特히 秘密을 要하는 것이라고 委員會에
서 決定한 部分 또는 第 71 条의 規定에 依하여 委員長이 取
消케 한 発言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第 161 条 (承認하지 아니한 質問要旨書의 会議録掲載) 議長 또는
議院이 承認하지 아니한 質問要旨書를 会議録에掲載할 경우에
議長이 그要旨書가 簡明치 아니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것을 簡
明한 것으로 고치게 할 수 있다.

第 15 章 会議録

第 200 条 (会議録의 記載事項) 会議録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한다.

1. 開議 休憩 散会 또는 延会의 年月日時刻
 2. 議事日程
 3. 召集에 应答 議員의 姓名
 4. 開會式에 関한 事項
 5. 議員의 移動
 6. 議席의 指定 또는 變更
 7. 要求書의 受領 또는 通知書의 発送 및 受領
 8. 奏上에 関한 事項
 9. 請案의 發議 提出 付託 送付 延付 또는 撤回에 関한 事項
 10. 出席한 國務大臣 또는 政府委員의 姓名
 11. 会談에 付한 案件 및 그內容
 12. 委員會의 報告書 및 少數 意見書
 13. 議長의 報告
 14. 議 事
 15. 質問要旨書 및 答弁書
 16. 選舉 및 記名投票의 投票者 姓名
 17. 議員의 發言補充書
 18. 其他 議院 또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 才 201 条 (議事의 速記) 議事는 速記法에 依하여 速記한다.
- 才 202 条 (簡單한 參考文書의 揭載) 議員이 自己 演說에 參考로

하기 위하여 簡單한 文書를 会議錄에 掲載하려고 할 때는 議長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203条 (字句의 訂正) 演說한 議員은 会議錄에 配付日翌日의 午後5時까지 그字句의 訂正을 要求할 수 있다.

但 演說의 趣旨는 變更할 수 없다.

第204条 (会議錄 또는 訂正에 대한 异議의 決定) 会議錄에 記載한 事項 또는 会議錄의 訂正에 대한 异議를 申立하는 者가 있을 때는 議長은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議院에 불여이를 決定한다.

第205条 (会議錄의 保存) 会議錄은 議長 또는 当日의 会議를 可会한 副議長·臨時議長·事務總長 및 그의 代理人가署名하여 議院에 保存한다.

第206条 (官報掲載) 会議錄은 官報에掲載한다.

但 國會法 第63条의 規定에 의한 秘密을 要하는 것으로 議決한 部分 및 同法 第116条의 規定에 依한 議長이 取消하게 한 発書은掲載하지 아니한다.

第207条 (配付頒布) 官報에掲載한 会議錄은 각議員에게 配付하고 一般에 頒布한다.

(附錄 3)

參議院 規則 (会議録関係条文抜萃)

第56条 委員회는 會議録을 作成한다.

第57条 委員회의 會議録은 委員長 또는 当日의 會議를 司会한
幹事が 署名하여 事務局에 保存한다.

第58条 委員회의 會議録은 印刷하여 各議員에게 配付한다.

但 秘密會議의 記錄中 그委員회에서 特히 秘密을 要하는 것으로
決議한 部分 및 第51条에 依한 委員長이 取消를 命한 発
言은 이것을 揭載하지 아니한다.

第59条 前3条의 規定外 委員회의 會議録에 있어서는 第156
条부터 第158条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55条 國會法 第74条 第4項에 依하여 質問要旨書를 會議
録에 揭載할 경우에 議長이 그 要旨書가 簡明치 아니하다고
認定될 時는 簡明한 것으로 고치게 할 수 있다.

第10章 会議録

第156条 會議録에는 速記法에 依해서 모든 議事를 記載하지아
니 하면 아니된다.

第157条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 特히 議院의 議決을
거친 것이나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것은 會議録에 記載한
다.

第158条 発言한 議員은 会議録 配付日 翌日의 午後 5時까지
発言의 訂正을 要求할 수 있다.

但 訂正是 字句에 限하여 発言의 趣旨를 變更할 수 없다.

國務大臣 政府委員 其他 会議에서 発言한 者도 또한 같다.

会議録에 記載한 事項 및 会議録의 訂正에 対하여 議員이 异議
를 申立하였을 時에 議長은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議院에 물
여 이를 決定한다.

第159条 事務局에 保存하는 会議録은 議長 또는 当日の 会議
를 司会한 副議長 臨時議長 事務總長 및 그의 代理者인 參事が
이에 署名한다.

第160条 会議録은 印刷하여 각 議員에게 配付하고 一般에 頒
布한다.

第161条 配付 및 頒布하는 会議録에는 国会法 第63条에 依한
秘密을 要하는 것으로 議決한 部分 및 同法 第116条에 依한
議長이 取消를 命한 発言은 이를 掲載하지 아니 한다.

(附錄 4-1)

衆議院速記者養成所規則

第1条 本所는 衆議院의 論事速記에 從事할 者의 發成을 目的으
로 한다.

第2条 本所의 修業期間은 本科2年 研修科1年으로 한다.

但 必要할 時는 이를 伸縮할 수 있다.

第3条 本所의 学科目 및 每週 教授時間數는 다음과 같으며 年
40週以上 授業하여야 한다. 但 特히 必要할時는 所長이 菜
務局長의 承認을 얻어 이를 變更할수있다.

学科目	本科1年		本科2年	研修科
	前期	後期		
速記法	18	1	1	1
速記術		15	12	6
速記実習		3	6	9
速記史			1	X
速記学				1
外国语	2	2	2	2
国語学	2	2	2	2
音声学	1	1		
文字学	1			
言語学				1
論理学				1
法律学	2	2	2	2
経済学	2	2	2	2
新聞学	1	1	1	1
政治学				1
体育	1	1	1	1
特別講義	隨時	隨時	隨時	隨時
合計	30	30	30	30

第4条 本所의 入所資格은 다음의 각号에 該当한 者로서 入所試験 또는 体格検査에 合格한 者에 限된다.

1. 高等学校를 卒業한者 또는 이와 同等以上의 学歴이 있다
고 認定된 者

2. 品行方正 身元確実한 20才未満의 者

第5条 入所가 許可된 者 (以下 이를 生徒라함) 는 東京都内에
在住하는 身元確実한者 1人の 保証人과 別記書式의 諸約書를
提出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第6条 保証인이 欠格되고 또는 死亡하였을 때는 새로히 前条
의 手續을 밟아야 한다.

保証인이 住所를 移転하거나 改名하였을 때는 그 事由를 速
한 時日内에 届出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第7条 生徒에게는 每月一定額의 手当을 支給하여 必要한 学用
品을 給与한다.

但 欠席 一月以上인 者에게는 手当의 支給을 停止할 수 있다.

前項의 手당의 額은 事務總長이 決定한다.

第8条 生徒로서 成績이 優秀하다고 認定되는 者에게는 手当을
增額할 수 있다.

第9条 生徒는 国会開会中 速記事務의 補助로서 従事시킬 수 있다
前項의 構遇에는 手当을 増額할 수 있다.

第10条 生徒로서 다음의 각号의 1에 該当하는 者에게는 退

所를 命할 수 있다.

1. 成業의 希望이 없다고 認定된者
2. 疾病 其他의 事由로 長期間 欠席한者
3. 懈惰 또는 品行不良한 者
4. 退所를 願하는者

前項 第3号 또는 第4号에 該当되어 退所의 命을 받은
者에게는 既히 支給된 手當金을 返納시킬 수 있다.

本人이 手當金을 返納치 아니할 때는 保証人으로 하여금
代納케 한다.

第11条 各 修業期間終了 때는 卒業試験을 行하며 그 成績에
依하여 卒業証書 또는 修業証書를 授与한다.

第12条 本所에 聽講生을 들수 있다.

聽講生에 관한 規程은 所長이 事務總長의 承認을 얻어 定
한다.

誓 約 書

今般 來謁院速記者養成所에 入學이 許可됨에 있어 規則을 故
重히 守護하여 热心히 修業하겠습니다.

本人의 一身上에 関한 事項은 何事も 不問하고 保証人 責任
下에 貴院에 対하여 損傷됨이 없도록 할것을 保証人連署로 誓
約하唔이다.

昭和 年 月 日

本 籍

現住所

本人姓名 ㊞

年 月 日 生

本 籍

現住所

保証人姓名 ㊞

年 月 日 生

衆謁院事務總長 貴下

(附錄 4-2)

衆議院速記者養成所入所案内

生徒募集要項(1968年度)

1. 修業年限 2年半

2. 募集人員 15名以内(ユ中 女子는 若干名)

3. 入所資格

(1) 男子는 高等学校卒業 또는 1968年3月 卒業豫定인者

(2) 女子는 1968年3月 高等学校卒業豫定인者

(3) 男女共に 1948年4月2日以後 出生한 者

4. 出願手続

(1) 提出書類

① 願書 本所에서 交付하는 用紙(A)에 記入할 것

② 身上書 本所에서 交付하는 用紙(B)에 記入할 것

③ 高等学校長의 調査書

④ 提出處 東京都世田谷区玉川用賀町3-10 衆議院速記者養成所

⑤ 提出期間 2月10日(土)부터 2月29日(木)까지

⑥ 受験料 省略

⑦ 受験票 3月上旬에 現住所 앞으로 보내드림

5. 入所試験

(1) 試験期日 3月14日(木)

- (2) 試験場所 東京都世田谷区玉川用賀町3-10
衆議院速記者養成所
- (3) 試験科目 国語 (現代文이 주되 古文 漢文은 包含하지 않음)
英語 (英文和訳이 주되 和文 英訳 英文法은 包含치 않음)
社会 (政治 経済 時事問題가 주되 選択制는 없음)
速記適性検査 (本所 独自의 方法으로 行하되 常識程度의 問題 速記知識은 必要없음)
- (4) 学科試験合格発表 3月下旬
- (5) 体格検査 및 面接試験 学科試験合格者에 对하여 行하되 日時는 追後通知함
- (6) 合格発表 3月下旬

(附錄第 5-1)

參議院速記者養成所生徒規則

第 1 条 參議院의 速記事務에 從事할 職員의 養成을 目的으로 本 所生徒를 둔다.

第 2 条 生徒의 入所時期는 每年 4月이며 修業期間은 满 3個年으로 한다. 但, 事情에 依하여 入所時期 및 修業期間을 變更할 수 있다.

第 3 条 本所의 入所生徒는 新制高等学校 卒業者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学力이 있다고 認定된 者로서 满 20 歲以下の 者中 入 所試驗을 行하여 이를 定한다.

第 4 条 入所志願者는 甲号書式의 入所願書 및 受驗要綱에 定한 書類를 所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前項의 受驗要綱은 入所試驗때마다 定한다.

第 5 条 入所試驗은 國語 英語 및 朗誦반아쓰기 其他 適性検査 口頭試驗 価格検査等을 行한다.

第 6 条 入所가 許諾된 者는 保証人 2人의 連署 乙号書式의 計 約書를 所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2. 前項의 保証人은 身元確実한 者로서 1人은 東京都内에 居 住하는 者라야 한다.

3. 保証인이 그 資格을 잃거나 또는 死亡하였을 時는 遷滞 없이 다른 保証人을 定하여 第 1項의 手續을 밟아야 한다.

4. 保証人이 改名하였을 時 또는 住所를 变更하였을 時는
即時 그 事由를 所長에게 届出하여야 한다.

方7条 1. 生徒에게는 每月 一定額의 手当額을 支給하며 修學에
必要한 学用品의 全部 또는 一部를 紿與한다.

但, 正當한 事由없이 一個月以上의 缺席한 者에게는 手當金의
支給을 停止할 수 있다.

2. 学期末試驗結果 成績이 優良하다고 認定되는 者에게는 次学
期間 每月 特別手當金을 支給할 수 있다.

3. 方1項의 手當金 및 方2項의 特別手當金의 額手는 事務總
長이 이를 認定한다.

4. 授業料는 徵收치 아니한다.

方8条 다음 각号의 1에 該當하는 学生에 対하여는 退所를 命
한다.

1. 成績이 不良하여 学業을 繼続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者
2. 身病 其他 事故로 学業을 繼續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者
3. 怠惰 또는 品行不良으로 所內의 秩序를 紊亂케 한 者
4. 正當한 事由없이 1個月以上 缺席한 者

方9条 前条 方3号 方4号에 該當되어 退所케된 者 또는 自己
事情에 依하여 退所한 者에 対하여는 既히 支給된 手當金의
返納을 命한다.

方10条 1. 修業期間終科時는 卒業試驗을 行하여 이에 合格한
者에게 卒業證書를 授与한다.

2. 修業期間中 參謁院에서 行하는 速記者採用試驗에 合格한 者는 前項의 卒業試驗에 合格한 者로 認定한다.

3. 卒業試驗에 合格하고 人物 學業 共히 優秀한 者에게는 繼続 研修生으로서 修學시킬 수 있다.

4. 研修生에게는 手當金을 支給할 수 있다.

才11条 卒業試驗에 合格한 者는 參謁院速記事務에 從事할 職員의 資格이 있다고 認定한다.

才12条 本所를 卒業한 者로서 滿2年間 參謁院에서 速記事務에 從事하자 아니할 時는 既히 支給한 手當金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納을 命한다. 但, 參謁院의 事情에 依하여 採用되지 아니한 者 其他 特別한 事由가 있을時는 此限에 不在한다.

才13条 1. 本所에 聽講生을 들 수 있다.

2. 聽講生에 關한 規程은 所長이 事務總長의 承認을 얻어 定한다.

(附錄 # 5-2)

參 譯 院 速 記 者 培 成 所 入 所 案 內
生 徒 募 集 要 約 (1968 年 度)

1. 資 格 : 1947 年 4 月 1 日 以 後 出 生 한 高 等 学 校 卒 業 以
上 의 男 子 (1968 年 度 3 月 卒 業 豫 定 者 包 含)
2. 提 出 書 類 :
 1. 入 所 願
 2. 自 簿 履 歷 書
 3. 家 族 名 簿 및 志 願 者 調 查 表
(以上 三 項 의 用 紙 는 本 所 에서 交 付 함)
 4. 高 等 学 校 의 調 查 書
 5. 写 真 : 6 個 月 以 内 의 名 喻 型 1 枚
(上 半 身 . 脫 帽) 裏 面 에 姓 名 을 記 入
할 것 .
3. 提 出 处 : 參 譯 院 速 記 者 培 成 所
4. 出 願 期 間 : 1 月 10 日 부 터 3 月 10 日 까 자 封 封 에 (願 書 在 中)
이 라 明 記 하여 持 參 도 는 郵 送 할 것 .
5. 選 考 : 提 出 書 類 依 款 選 考 를 行 하여 試 驗 을 받 는 대
適 格 하 다 고 認 定 된 者 에 게는 願 書 마 召 律 受 驗 票
를 現 住 地 로 発 送 할 것 .
6. 試 驗 期 日 : 3 月 下 旬
7. 試 驗 場 所 : 參 譯 院 速 記 者 培 成 所
8. 試 驗 科 目 : 1. 国 語 (古 文 은 包 含 치 諺 音)

英語·社会(一般社会·時事問題)

2. 通性検査

3. 面接 및 身體検査)

9. 合格者発表: 4月上旬

10. 採用人員 : 15名程度

本所의 내용

1. 目的 및 沿革 : 本所는 參議院의 議事速記에從事할者를
養成할 것을 目的으로 1968年에創立
하여 過去 50餘年에 걸쳐 專門速記士養成
機關으로서 우리나라 速記技術의 進步發展
에 多大한 貢獻을 하여 왔다.

2. 授業内容 : 通年 全日制에 依하여 每週 30時間, 年 40
週以上の 授業을 行替.

通信教育, 短期講習 夜間授業은 行하자 併고 있음

専攻科目 — 速記

教養科目 — 國語, 外國語, 法律, 經濟, 其他

3. 修業年限 : 修業年限은 2個年 但, 參議院速記職員採用試験에
合格한 者는 研究生으로서 卒業後 6個月間 研
修를 行한다.

4. 生徒의待遇: 授業料는 徵収치않음.

生徒에게는 每月手当金(4千円以内)과 必要한

学用品을 支給하며 成績優良한 者에게는 特別手
当金을 加給한다. 또한 前記 研修生에게는 每月
手當金 (8千円以内) 을 支給함.

5. 生徒寮 : 1. 希望者에게는 選考하여 入寮을 许可함 (寮費는
無料 食事은 外食을 原則으로 함)

6. 卒業後の進路

參議院에 採用된 者는 速記士補가 되며 그後 速記士 主任速
記士 速記副監督, 速記監督으로 昇進할 수 있음.

參議院에 採用되지 않을 時에는 一定한 技術水準에 到達하면
各 都, 道 府 県 議會, 市 議會, 新聞, 通信社等 各方面에 就
職의 갈이 열려있음.

參議院速記者養成所

(附錄# 6-1)

社團 法人 日本速記協會 定款(抜萃)

才2章 目的 및 事業

才4条 本 法人は 널리 국민의 記記能力을 增進하고 記錄事務의 能率化를 期하기 為하여 速記의 普及発達과 그 利用 分野의 開発에 힘쓰며 아울러 速記 技能者의 技術水準 및 社會的 評価의 向上에 供하는 諸事業을 行하여 이로써 우리나라 文化的 發展에 寄与함을 目的으로 한다.

才5条 本 法人は 前条의 目的을 達成하기 為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1. 速記教育, 記錄事務, 技術評価 其他 速記에 關한 調査研究
2. 文部省의 速記技能審查基準에 依한 檢定, 登錄, 証明
3. 速記, 記錄事務에 關한 講習会, 研修会, 競技会等의 開催
4. 速記의 學習 및 利用에 關한 相談事業
5. 「日本의 速記」 및 速記에 關한 出版物의 刊行
6. 其他 法人の 目的을 達成하기 為한 必要한 事業

(附錄# 6-2)

社團法人 日本速記協會定款施行細則(抜萃)

(事務分掌)

第2条 事務局에 다음의 部, 室을 두고 각己 事務를 分掌한다.

1. 総務部

公印保管에 關한 事項

総会 및 理事会의 開催에 關한 事項

文書接受 및 発送에 關한 事項

事業計劃 및 事業報告에 關한 事項

支部 및 会員의 入退会에 關한 事項

事務局内の 人事, 給与, 手当, 厚生組織 및 庶務 営繕 用度等
에 關한 事項

表彰에 關한 事項

速記士証에 關한 事項

關係 諸団體 와의 連携에 關한 事項

其他 他部의 所管에 屬하자 아니하는 事項

2. 経理部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収入 및 支出에 關한 事項

物品購入 出納 및 保管에 關한 事項

3. 檢定部

速記技能検定에 관한 사항

検定合格者の登録 証明에 관한 사항

検定以外의 試験 競技会 講習会等에 관한 사항

4. 研究部

速記者等, 記録事務 従事者에 必要한 研修会, 講演会等에 관한 사항

5. 出版部

速記関係 図書의 出版, 宣伝 其他の 印刷関係

6. 事業部

速記教育, 技術評価 其他 国内 速記事情의 調査

各国 速記事情 調査

速記関係資料, 図書의 收集, 整理 및 速記関係 統計의 作成

速記普及에 供する 各種行事

7. 相談室

速記의 学習, 利用, 需要에 对한 相談事業 및 啓発宣伝에 관한 사항

8. 编集室

「日本의 速記」의 発行

第3条 前条의 各部에 部長 및 部員을 둔다.

部長 및 部員의 任免은 理事会의 承認을 거쳐 理事長이 行한다

部長은 事務局長의 統制下에 各部의 事務를 分掌한다.

(表 彰)

第10条 本 法人은 速記文化의 向上을 期하기 為하여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를 理事会가 決定하여 総会等에서 表彰한다.

1. 速記方式을 創案 改良하여 速記技術의 發達向上에 貢獻한者이거나 速記界에 對한 功勞가 顯著한 者

2. 30年以上 速記의 實務 教育에 從事하여 그 成績이 優秀한 者 또는 速記의 普及宣傳에 寄与하여 그 実効가 顯著한 者, 速記에 關한 研究等을 發表하여 그 學術的 権威가 認定된 者

3. 本 法人の 事業에 特히 援助 協力하고 法人の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者

4. 本 法人 主催의 競技会 또는 試驗에 있어서 成績이 優秀한 者,

第11条 被表彰者에 對하여는 表彰状 또는 記念品을 수고 이를 「日本의速記」에 發表한다.

(速記技能検定)

第12条 本 法人은 速記의 普及 技能度의 確認, 社会的 評価의 向上을 期하기 為하여 速記技能의 檢定을 行한다.

檢定은 文部省이 定한 「速記技能審査基準」에 按아 5, 4, 3,

2, 1의 五級으로 나누어 각其 別個로 行한다.

検定에 있어서는 朗讀하는 文章을 速記하여 그 速記文을 翻文 하는 実技試験을 行한다.

各級의 速度 翻文時間 및 正確度는 다음과 같이 定한다.

等級別	分標準	朗讀時間	朗讀字數	反訳時期(翻文) (倍数)	正確度(許容失点)
5	120字	5分	600字	60分 (12倍)	96% (24字)
4	180字	5分	900字	60分 (12倍)	97% (27字)
3	240字	5分	1,200字	60分 (12倍)	97% (36字)
2	280字	5分	2,800字	130分 (13倍)	98% (66字)
1	320字	5分	3,200字	130分 (13倍)	98% (64字)

第13条 檢定実施要綱은 檢定実施當時에 第一回檢定実施要綱이라 하여 作成하고 当該 委員會의 審認를 거쳐 理事会에서 決定 発表한다.

第14条 受験料는 다음과 같이 定한다.

5級 300円, 4級 500円, 3級 700円, 2級 1,000円
1級 1,200円

第15条 檢定合格者에게는 合格通知書를 発送하고 本人의 申請에 依하여 合格証書를 発行한다. 発行手數料는 300円으로 한다
検定合格者は 檢定合格者 名簿에 登録한다.

登録한 者에게는 本人의 申請에 依하여 合格証明書를 発行한다
証明手數料는 100円으로 한다.

(檢定以外의 試験)

第 16 条 本 法人은 速記의 普及과 技術水準의 向上을 期하기
為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時에는 檢定以外의 試験이나 競演大
会를 実施할 수도 있다.

試験의 種類는 다음과 같이 定한다.

1. 速記試験 一 分速 360 内外
2. 奨励試験 一 低速度를 主로한다.
3. 模擬檢定試験 一 試験基準은 檢定에準한다.
4. 速記技術競演大会

フ. 高速度競技

レ. 難度競技

ニ. 無過失競技(個人 또는 団體)

前項 試験의 実施要綱은 当該 委員會에서 別途로 定한다.
支部가 本条의 試験을 行할려고 할 時에는 当該 委員會의
承認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速記士証交付)

第 17 条 本 法人은 速記記錄의 質的인 向上을 図謀하고 速記技
術者의 資格을 区分하기 为하여 檢定 1級 또는 速度試験 合
格者 및 競技会 入賞者에게는 準速記士証을 本人의 申請에 依
하여 交付한다.

旧 日本速記協会에서 實施한 速記技術檢定試験 2級以上의 合格

者는 速記士証 交付相當者로 본다.

又年 速記実務에 從事한 者는 異議의 意見에 依하여
特別히 速記士証을 交付할 수 있다.

第18条 速記士証 準速記士証의 交付를 받고자 하는 者는 所定
의 交付申請書에 腹歷書 1通, 戶籍抄本 1通 写真(세로 40^{mm} ×
가로 30^{mm}) 2枚 및 手數料(速記士証은 1,500円, 準速記士証
은 1,000円)와 여부터 登錄料金 2千円을 具備해서 理事長
에게 申請하자 아니하면 아니된다.

但, 既히 会員 者는 登錄이 必要치않다.

再交付를 申請할 時에는 写真 1枚 및 手數料 500円을 具
備해서 理事長에게 申請하자 아니하면 아니된다.

申請書는 当該 委員會 및 常務理事會에서 審査하여 適格者로
認定되는 者에게는 速記士証書 및 速記士証 또는 準速記士証書
및 準速記士証을 交付한다.

前項의 証을 받은 者의 姓名을 速記士名簿에 登錄한 後에
「日本의速記」에 發表하며 支部가 있는 地域의 者에 對하여는
支部에 通知한다.

(記録事務 研修会)

第19条 本 法人은 速記者等 記録事務에 從事하는 者의 知識,
技能의 向上을 図謀하기 為하여 関係團體와 共同開催로서 記録
事務 研修会를 開催한다.

記錄事務 研修会의 實施要綱은 實施當時에 共同開催團體와의 協
議下에 作成하여 当該 委員會의 啓認를 거쳐 理事會에서 決定
發表한다.

(附錄 #7)

東京速記士会会則

第1章 名 称 及 組 織

第1条 本会는 東京速記士会라 称하고 事務所는 東京都에 둔다.

第2条 本会는 東京及 그 近県의 速記業務에 從事하는 者로서
組織한다.

第2章 目 的 及 事 業

第3条 本会는 會員相互間의 親和協同及 速記士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向上을 目的으로 한다.

第4条 本会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為하여 다음의 事業을 施行
한다.

1. 会员速記士의 信用과 責任을 保証하기 為한 登錄名簿의 発行
2. 速記料의 協定

3. 会议의 教養, 親睦, 共濟, 廉弔等에 必要한 事項

4. 速記業務에 必要한 조건의 確立

5. 速記業務에 關한 試驗과 競技

6. 速記業務와 人事에 必要한 連絡

7. 關係團體와의 連絡과 協力

8. 其他 必要한 事項

第3章 会員

第5条 本会의 会員은 다음의 二種으로 한다.

1. 正会員

2. 賛助会員

第6条 正会員은 다음 각号의 1에 該當한 者로서 理事会가 選考承認한 者로한다.

1. 本会에서 施行하는 試験 또는 競技에 合格한 者

2. 日本速記協会 速記士證을 所持한 者

3. 速記實務에 2年以上의 經驗을 가진 者로서 正会員이 推薦한 者

4. 其他 理事会에서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한 者

第7条 賛助会員은 本会의 目的에 賛助하는 者로서 理事会에서 承認한 者로한다.

第8条 会員은 会則과 本会에서 定한 協定을 嚴守할 義務를 가진다.

第9条 会員이 会則과 協定을 違反하거나 本会의 脣面을 損傷하는 行為를 하였다고 認定될 時는 別途 定하는 바에 依하여 罰則을 適用한다.

第4章 入会와 会費

第10条 本会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本会 所定의 手續節次에 依하여 入会金 1,000円을 添付 申込하여야 한다.

第11条 会費는 正会員은 年額 2,400円으로 하고 賛助会員은 別途로 定한다.

第5章 役員

第12条 本会에 다음의 役員을 둔다.

1. 会長 1名

2. 理事 若干名

3. 監事 2名

第13条 役員은 総会에서 選任한다. 但, 缺員의 补充은 理事会에서 選任할 수 있다.

第14条 役員의 任期는 次期定期会 終了까지로 한다. 但, 重任할 수 있다.

第15条 会長은 本会를 代表하며 会務를 総括한다.

第16条 理事는 理事会를 組織하여 会務를 处理한다.

理事会는 理事長과 副理事長을 互選할 수 있다.

理事会는 必要에 依하여 委員会를 設置 또는 廃止할 수 있다

第17条 監事는 本会의 会計를 監察한다.

第18条 本会에 顧問을 둘 수 있다.

第6章 総会

第19条 定期総会는 每年 1回 開催한다. 定期総会에는 会務와 会計狀況을 報告하고 承認을 得한다.

第20条 臨時総会는 理事会의 決議 또는 正会員 3分之 2以上의 要求가 있을때에 開催한다.

第21条 総会의 議事는 會則에 特別히 定한 것을 除하고는
出席者の 過半數로서 決定한다.

第7章 資產과 会計

第22条 本会의 資產은 入会金, 会費, 寄附金 其他 収入으로 形成한다.

第23条 本会의 会計年度는 10月1日에 始作하여 9月30일에 終了된다.

第8章 附 則

第24条 本会 会則의 改正 및 会員의 除名은 半數以上이 出席한 理事会에서 3分之2以上의 賛成이 있은 後 総会에서 出席者の 3分之2以上의 計決로서 決定한다. 但, 除名된 者의 再入会에 關하여는 除名後 1年以上 經過된 다음 理事会에서 過半數의 賛成을 得하여야 한다.

